

第263回國會  
(臨時會)

#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12月21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5.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6.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7. 油類污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0.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계속)
11.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4.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계속)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8.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계속)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5.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계속)
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계속)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계속)
3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教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7.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기초노령연금법안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
5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7.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58.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0.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61.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4.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68.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74.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75. 스포츠산업 진흥법안
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8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8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8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동의에 관한 건
- 

### 審查된案件

1.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6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6
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6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5.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6
6.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6
7.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김학송·권철현·김종률·최인기·채수찬·우제창·김혁규·이시종·이성권·이계안·최철국·정갑윤·최규성·김우남·심재엽·신학용·심재철·김충환·안홍준·엄호성·김재경·이근식·이재오·이상경·박승환·나경원·이해봉·김영덕·노영민·김태년·박재완·허태열·안상수·이영호·유정복 의원 발의)(계속)	6
8.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6
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6
10.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6
11.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우제창·이종걸·이인기·노현송·조성래·김선미·우제항·김낙순·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10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10
1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10
14.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0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0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0
18.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우원식·김형주·선병렬·강기정·김태홍·이광철·김태년·윤원호·강혜숙·김동철·한명숙·최규성·한병도·유승희·민병두·이재오·정두언·안민석·홍미영·안상수·권오을·지병문·우상호·이호웅·이미경·김재윤·주승용·장향숙·김재홍·양승조·백원우·정청래·강창일·이인영·김교홍·박기춘·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10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장 제출)(계속)	10
2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장 제출)(계속)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계속) .....	18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 · 이해봉 · 진영 · 권선택 · 서상기 · 이시종 · 허천 · 홍창선 · 김희정 · 박세환 의원 발의)(계속) .....	18
23.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18
25.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26.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27.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정부 제출)(계속) .....	18
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 · 이인기 · 김석준 · 장윤석 · 박순자 · 박재완 · 김무성 · 이해봉 · 엄호성 · 이성권 · 김정훈 · 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	18
29.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권경석 · 김영숙 · 신상진 · 이성구 · 이성권 · 이인기 · 이재웅 · 이해봉 · 주성영 의원 발의)(계속) .....	21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서갑원 · 김태년 · 우제항 · 김덕규 · 이시종 · 박순자 · 권선택 · 이명규 · 조정식 · 김형주 · 노영민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21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22
3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한병도 · 염동연 · 최철국 · 이계안 · 조정식 · 우제항 · 김형주 · 오영식 · 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22
34.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2
3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2
3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2
3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정부 제출)(계속) .....	22
3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3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4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2
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8
42.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9
4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9
44.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9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9
46. 教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9
47.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4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4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 박상돈 · 배기선 · 곽성문 · 배일도 · 이원복 · 안택수 · 정두언 · 정진섭 · 이경재 · 유재건 · 신상진 · 정동채 · 남경필 · 이성구 의원 발의) .....	29
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43
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	43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정화원 · 정청래 · 장향숙 · 최재성 · 김덕규 · 윤호중 · 강기정 · 양승조 · 장복심 · 이광재 · 김부겸 · 안민석 의원 발의) .....	47
53. 기초노령연금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강창일 · 구논희 · 김낙순 · 김덕규 · 김동철 · 김부겸 · 김선미 · 김영주 · 김우남 · 김재윤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형주 · 김희선 · 노웅래 · 노현송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병석 · 박찬석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혜석 · 심	

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계안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석현 · 이시종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임종석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정봉주 · 정성호 · 정장선 · 정청래 · 조경태 · 조성래 · 조일현 · 주승용 · 지병문 · 최규성 · 최규식 · 최철국 · 한광원 · 한병도 · 홍미영 의원 발의) .....	47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안민석 · 엄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의원 발의)(계속) .....	55
53.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 .....	55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	55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안민석 · 엄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의원 발의)(계속) .....	55
53.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55
5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박재완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	56
5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	56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	56
57.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	56
58.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	56
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1
60.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1
61.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1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1
63.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1
64.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우원식 · 김동철 · 신중식 · 주승용 · 이호웅 · 이시종 · 우윤근 · 조경태 · 강혜숙 · 윤호중 · 박상돈 의원 발의) .....	61
65.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78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78
68.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78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옹래 의원 대표발의)(노옹래 · 정청래 · 김재윤 · 김명자 · 강길부 · 김재홍 · 이광철 · 전병현 · 강혜숙 · 한광원 · 박찬석 · 우상호 · 장경수 · 최철국 · 김희선 · 강성종 · 박기춘 · 김교홍 · 박찬숙 · 윤원호 · 지병문 · 오제세 · 김혁규 · 정동채 · 정성호 · 최성 · 최용규 · 이광재 의원 발의) .....	78
70.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태년 · 김재윤 · 이광철 · 정장선 · 김동철 · 이목희 · 박기춘 · 최규식 · 양형일 · 정청래 · 김원웅 · 신중식 · 최성 · 강기정 · 최규성 · 김춘진 · 조배숙 의원 발의) .....	86
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86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86

7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권선택 · 김교홍 · 김낙성 · 김덕규 · 김덕룡 · 김명자 · 김무성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성조 · 김영선 · 김영주 · 김우남 · 김재윤 · 김재홍 · 김정훈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형주 · 김홍일 · 김효석 · 김희선 · 나경원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류근찬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석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송영길 · 신국환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선호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열 · 이시종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정일 · 이종결 · 이혜훈 · 이화영 · 임종인 · 임채정 · 임태희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전병현 · 전여옥 · 정갑윤 · 정성호 · 정청래 · 조배숙 · 지병문 · 진수희 · 채수찬 · 최성 · 최규성 · 최규식 · 최연희 · 최인기 ·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 한병도 · 홍미영 의원 발의) .....	86
74.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고홍길 · 노웅래 · 강성종 · 강혜숙 · 권선택 · 권오을 · 김광원 · 김무성 · 김선미 · 김정권 · 김태년 · 노영민 · 단병호 · 문학진 · 민병두 · 박진 · 배기선 · 변재일 · 서재관 · 심재덕 · 안상수 · 엄호성 · 우제항 · 원혜영 · 유기준 · 윤호중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진 · 이규택 · 이낙연 · 이원영 · 이윤성 · 임태희 · 정성호 · 정장선 · 정종복 · 정진석 · 정청래 · 정형근 · 제종길 · 최구식 · 홍재형 의원 발의) .....	87
75.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기정 · 강성종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웅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종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 .....	87
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7
7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91
78.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91
79.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91
8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91
8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 · 김무성 · 임인배 · 김석준 · 권경석 · 박세환 · 이인영 · 박찬숙 · 이해봉 · 이성권 · 고경화 · 안명옥 의원 발의) .....	91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	98
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99
83.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주성영 · 주호영 · 김재경 · 천정배 · 양승조 · 우윤근 · 장윤석 · 정성호 · 선병렬 · 최용규 의원 발의) .....	99
8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 김재원 · 안상수 · 엄호성 · 박찬숙 · 심재철 · 이해봉 · 이재창 · 김정훈 · 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	100
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정문현 · 이해봉 · 이인기 · 권오을 · 엄호성 · 임태희 · 김태환 · 임인배 · 곽성문 · 김석준 · 강재섭 · 윤건영 · 권영세 · 정두언 · 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	100
8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0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0
89.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동의에 관한 건 .....	102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화**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1.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6.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7.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 · 김학송 · 권철현 · 김종률 · 최인기 · 채수찬 · 우제창 · 김혁규 · 이시종 · 이성권 · 이계안 · 최철국 · 정갑윤 · 최규성 · 김우남 · 심재엽 · 신학용 · 심재철 · 김충환 · 안홍준 · 염호성 · 김재경 · 이근식 · 이재오 · 이상경 · 박승환 · 나경원 · 이해봉 · 김영덕 · 노영민 · 김태년 · 박재완 · 허태열 · 안상수 · 이영호 · 유정복 의원 발의)(계속)
8.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10.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10시14분)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 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단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안 제71조제2항 및 안 제79조제5호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무단으로”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되,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서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79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행위는 그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입법 의도와 달리 전기공급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지구와 주택단지의 개념이 혼동되어 한국전력공사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둘째로 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유자에 대하

여 그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이 현행보다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공공목적을 위한 재산권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보다 2년간 약 4000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의 재정 측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비법정전출금의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법정전입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제6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안 제11조제7항에서 또다시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재정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률안의 내용과 법 제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도 일부 규정하고 있는 등 법 제명이 법률안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안 제43조제1항제3호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미래에 발생될 이익까지 예상해서 공제한다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을 현실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공제급여를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로 공제료를 일부 체납하는 경우에 공제급여 전체를 제한하는 안 제43조제2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학교에 한정되어 있고 학생 1인당 부담하는 공제료도 소액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제회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 및 이에 관한 별칙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제회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 국가 등의 체류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제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점을 알면서 방문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험 국가 등의 체류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이혼특례규정이 축출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임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소유자가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유류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 있어서 별칙규정의 중요성 및 일본의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의 예

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규 위반의 비범죄화 추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요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자의 개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개정안 제28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정지 사유는 유사 법률인 수의사법이나 의료법 등에도 면허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과 같이 면허정지 사유로 유지하기로 하되, 각목의 사유는 품위손상 행위의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각목의 사유를 각각 별도의 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과 법체계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해양오염방지법을 참고해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강하게 요구된다며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주영 소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박세환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신설 조항을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치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필요한가요?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영치를 하면 그것을 시·도지사한테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희는 이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자체는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문제는 행정상으로 통계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꼭 절실하다고……

○**박세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후 보고 형식인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박세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박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매도청구 제외대상을 10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을 했는데, 100분의 80의 사용권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10년 이전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사업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습니까? 10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매도청구권만 보면 이

것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사유재산권 이쪽도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조화, 캠프로마이즈(compromise) 차원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현재 3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확보·연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해도 때로는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보통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다 10년 이상 소유를 한 경우가 많고, 또 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개정안대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10년이라고 한다면 100분의 90을 확보했을 때는 20년 또 100분의 95를 확보했을 때는 30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정안대로 통과시키더라도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0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우제창·이종걸·이인기·노현송·조성래·김선미·우제향·김낙순·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1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14.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8.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우원식·김형주·선병렬·강기정·김태홍·이광철·김태년·윤원호·강혜숙·김동철·한명숙·최규성·한병도·유승희·민병두·이재오·정두언·안민석·홍미영·안상수·권오을·지병문·우상호·이호웅·이미경·김재윤·주승용·장향숙·김재홍·양승조·백원우·정청래·강창일·이인영·김교홍·박기춘·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장 제출)(계속)
2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장 제출)(계속)

(10시30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 감

독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0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 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지난번에 법안심사 2소위에서 다룬 안건들이 많아 가지고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규정이 민영화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시행 과정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종합적인 구호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한 해외재난의 수습 및 지원에 관한 부분과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두 가지 신설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100분의 2가 새로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시행 중인 규모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과 다른 경우보다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가 경기도 의왕시의 한글 명칭은 그대로 두고, 다만 한자표기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정안의 법률 제명을 그 취지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한자표기 변경도 현행 지방자치법이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명칭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법률안 제명을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본칙도 이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범죄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후원수당의 산정요건이 되는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산정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등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4항의 법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알기 쉽게 자구를 정리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9일까지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환전업도 그때까지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안

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전업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게임머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심의를 의무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모든 게임에 대해 기술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법률에 예시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과 관련해서 안 제16조제4항에서 이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이를 안 제16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제4항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같이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소관 부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사무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법률에 소관 부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입법례가 많이 있고 위원회의 업무도 여러 부처에 걸친 다소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 주관 부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무처를 두도록 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와 현장사무소·상담소 비용의 상한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금으로 보험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보험관리운영비는 보험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가 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현재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십자사의 사업수행 및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 규정한 것을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의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이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약간 문제 있는 조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하면,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소위 게임머니, 게임커런시가 게임의 사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환전이나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온라인게임의 비즈니스 구조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결국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 같고……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할 계획입니까? 결

국 사행성이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특히 아이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관련자들하고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를 놓고서 구체적으로……

○이상경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 여부가, 계획이 없습니까? 용역 결과 나온 후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지금 안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상경 위원 사실 시행령 말고 법에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법안은 다 심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예, 주성영 위원입니다.

새로 제안된 대안 가운데 방금 우리 이상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조문의 같은 조항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률안에 게임머니하고 게임아이템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대통령령에 그냥 막연하게 위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지난번에 대체토론할 때 우리 장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이버상의 게임머니 환전도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지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게임아이템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주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게임커런시, 그러니까 리니지에 나오는 아데나 이런 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 금지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성영 위원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장관님께서 게임머니하고 게임커런시의

개념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 게임커런시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금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환전 문제에 있어서 게임아이템, 게임커런시 문제는 지금 현재의 게임머니하고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요.

○주성영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게임산업 종사자나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게임머니에 대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개념하고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훌러갈 것인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32조제1항제7호에 게임머니라고 하지 말고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라든지 ‘사행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을 진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아예 게임등급 분류에서도 제외하는 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성영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러니까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은 등급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들은 이미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주성영 위원 아,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일반 게임을 하면서 게임커런시로 거래도 하고 환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허가된 게임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게임머니를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환전을 업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금지를 하고요. 게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기라든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장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회와 전문 용역을 거쳐서 좀더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장관님, 지금 현재 게임커런시를 중계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체토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 중계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국내에 접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광부의 기본 취지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주성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가 차단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이트 차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 게임머니의 개념을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호의 게임머니 앞에다가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라고 명확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사행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실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딱 규정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주성영 위원 우리가 사행성 게임물을 단속하고 규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허가된 게임상에서도 게임머니를 통해서 거래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성영 위원 자꾸 중복되는데 이 법안으로는 게임머니하고 게임커런시가 구별될 수 없어요. 실제로도 혼재되어 있고…… 하지만 게임커런시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실력하고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용하는 역할은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대로라면 그것이 구별이

안 되고 다 규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내업체하고 외국업체를 차별하는 결과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32조제1항제7호 법문에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로 한정해 놓으면 이런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 의도는 그런 문제를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성영 위원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문화관광부나 검찰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커런시를 단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은 아니고요……

○주성영 위원 가능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주성영 위원 그래서 법령에 게임머니를 ‘사행성 게임물하고 관련되는 게임머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安商守 실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성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임커런시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게임머니로 통하고 있고 지금 법에 반영된 것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분명히 구분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법으로도 충분히 구별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행성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법이외의 사항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번 법의 취지에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념정의가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게임산업기본법의 영역 이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행성이 우려되는,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로 할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 다룰 수 없는, 법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잠시 서 계세요.

○주성영 위원 이 법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의’ 또는 ‘사행성이 높은’ 이런 것을 추가하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조창희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물은 아예 게임산업진흥법의 영역 이외의 것이거든요. 그것은 불법으로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행성을 앞에 넣을 경우에는 법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승인하고 허가된 게임물을 대상으로 환전도 금지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도 전부 금지하거나 규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현재 이 법률안에는 게임아이템하고 게임머니의 정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행령에서 하겠다는 취지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도 많고 해서 현재 아이템 거래에 대한 포럼을 운영하고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베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게임머니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커런시라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구별이 가능하다, 아이템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입니다.

○주성영 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장관님보다 실무자가 명확하게 더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필요하면 실무자 시키세요. 장관이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같은 법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의해서 사행성 게임물에 관한 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해 놓고 다시 안 제28조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하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품을 제공하는데도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전체이용가 게임 중에서 학용품이나 인형이나 크게 사행성이 도드라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품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학용품, 인형을 받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즐길 때 인형을 수십 개, 수백 개씩 집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도박의 열풍으로 몰아넣은 문광부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처벌받은 문광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의 국장 빼고……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동철 위원 자체적으로 징계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김동철 위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중징계 처벌을 받은 직원이 몇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중징계가 무엇인데요? 파면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중징계 범위 안에서……

○김동철 위원 문광부가 국민에 대해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에 못을 박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문광부가 아직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경품을 주는 순간 그것은 사행성 게임물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 경품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

요? 결국은 그것이 환전이 되고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환전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제28조제3호의 단서조항은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하는 부분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행성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려고 업체들은 로비할 것이고 또 사행성 게임물로 안 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경품을 제공할 것이고, 경품을 제공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단속 기관에서는 경품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법이 허용하는 경품인지 아닌지 그것 가지고 단속할 것이고, 단속인력이 이렇게 들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당정협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단속인력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도저히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1만 5000개~2만 개 가량 되는 게임업소를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한 업소마다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게임장을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속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런 경품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8조제3호의 단서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제28조제3호입니까?

○김동철 위원 예.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상품권이 폐지되었고 사행성 게임들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약간의 경품을 허용한 것은 경품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고요.

또 전체이용가 게임이라는 것은 사행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임들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1만 원 이하의 학용품이나 문구류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파동으로 연결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넣을 수가 없지요.

○김동철 위원 위헌성 여부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물어보셨습니까? 경품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어디에 문의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법무법인 정평이라는 곳에 물었고요, 1999년 대법 판결에서 2000원 이하의 경품은 사행성이 없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완규류·문구류를 계속 집에 받아놓고 게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완구·문구류만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은 그 게임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게임하면서 만년필이나 볼펜, 노트 이런 것을 수십 개, 수백 권씩 쌓아 놓을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게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업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것을 환전할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것을 두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경품을 주는 것 자체를 사행성으로 규정해서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환전 자체는 이 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으로……

○김동철 위원 아는데요, 환전을 아무리 금지해도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내기 전에도 현행법상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됐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배당률을 보통 95%에서 100%까지 허용해 준 이유가 환전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보기엔 전체 이용가 게임을 통해서 경품이 그렇게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게임을 즐기는 하나를 툴로서 경품을 허용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로 그러한 전체이용가 게임이 경품을 노리고 또는 환전을 하기 위해서 업소가 난립하고 업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영업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김동철 위원님, 다른 분 얘기도 들어보고요.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가 게임산업 진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행성 게임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게임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정된다고 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행성 게임이 아닌 정상적인 게임물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경품 종류에서도 이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경품의 종류는 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최소한의 경품들, 사실은 게임을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이용하고 그것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경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 입법취지가 다른 거예요.

사실 장관께서도 자꾸 이게 위헌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규정에 맞는 게 이 정도는 되어야 게임산업이 진흥되거든요. 아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이다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잘 답변하시면 돼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우려 때문에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사행성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번에는 사행성 게임이라는 것을 허용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허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사행성 게임 자체를 전면 불법화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사행성 게임이라고 그동안에 그것을 게임의 한 종류로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다이야기 사건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사행성 게임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문병호 위원** 그것은 정리가 확실히 된 것이지

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법사위원회의 현안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원회가 전부 끝나면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위원들이 간담회를 잠시 가질까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밝힐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 한 잔 하고 가시지요, 나중에.

그러면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저도 같은 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게임물이라는 게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승패가 정해지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그 승패에 따라서 아주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경품 제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김동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조항이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은……

**○박세환 위원** 그리고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이런 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당국에서 예민한 예민성을 가지고 업무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더해진다면 어떻습니까? 이 조항을 두어야 됩니까?

저도 이 조항 없애는 게 맞다, 단순히 게임에서 제공되는 승패만 갖고도 만약에 얼마든지 재미있게 게임을 만든다면 게임산업 진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그것을 자꾸 승패에 따른 경품과 연관시키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임산업이라는 게 게임물 자체에서 승패로 해서 뭔가 게임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자꾸 경품과 연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게임의 특징이 사행성 게임일 경우에는 정말 베팅이나 배당 또는 우연

적인 결과에 의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게임들은 그 게임을 진행해 가면서 개인들이 어떤 성취감도 느끼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템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약간의 거래행위라든가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보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균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균절하고 완전히 게임 자체로만 즐겨라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했을 때 그러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것으로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게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저희들이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박세환 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랬을 경우에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등급을 올린다든가 성취를 했을 때 학용품 정도 아이들이 받는 것까지도 다 금지를 하고 오로지 게임만 해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박세환 위원 장관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게임물 자체에서 주는 어떤 성취감, 정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게임산업을 진흥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으셔야지 학용품을 나누어 준다 이런 것을 자꾸 연관시키고 이러면 글쎄요, 저는 이것은 정책방향에서도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현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동철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게임물 자체보다는 경품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에 목매달고 그러면 오히려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조장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게 지금 사회가 가르쳐 주는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게임산업의 후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게임물 자체에서 자꾸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드셔야지……

○委員長 安商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고 또 그 부분도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도 듣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전체 회의에 그냥 이 부분은 조금 보류시켜……

○문병호 위원 이것은 시급한 법안인데요.

○委員長 安商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 버리기는 조금……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법 자체는 물론 상당히 전향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게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될 법인 것은 틀림없는데 경품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구류가 사행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문구류도 얼마든지 사행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게임의 내용 자체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게임시간을 더 연장시켜 준다거나 또는 게임에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게임 내용상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의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후진적인 그런 경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다 업계의 로비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문광부장관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표라도 내면서 이 법이 정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검찰수사에 맡겨 놓고 어떤 사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벼짓이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자, 그러면 잠시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 2시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안에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오후에 다시 논의하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논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제17항을 제외하고—그것은 계속 오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제20항 중에서 제17항을 제외하고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장 제출)(계속)

##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 발의)(심재엽·이해봉·진영·권선택·서상기·이시종·허천·홍창선·김희정·박세환 의원 발의)(계속)

## 23.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25.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정부 제출)(계속)

## 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 발의)(이계경·이인기·김석준·장윤석·박순자·박재완·김무성·이해봉·엄호성·이성권·김정훈·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 29.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16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28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도는 공공목적을 위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대하여는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사생활 보호 및 개인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도를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신정보를 삭제, 임시조치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관한 통신정보를 임의로 임시조치하는 것과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을 명하는 것은 불법정보를 게재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법적 판단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통상우편물 및 우

표의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신서의 개념에 그림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신서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편법상의 적절한 용어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권한 없는 자의 기술사사무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을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비범죄화 추세 등에 부합되고 다른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역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반할 우려가 있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병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은 군 복무 중 자율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입영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병에게도 다양한 방식의 학점취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군 복무 중 학점취득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점취득의 상한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 할 계획이라는 점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금부족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자금부족 상황을 제1호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제2호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구체화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금의 고갈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초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고 현행 연금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군인연금제도의 조속한 개혁 촉구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미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자와의 형평성, 소급적용하더라도 소요예산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임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금지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제7조의 “임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규정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입법례도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제재기준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법이 등록·인가 취소 등의 제재기준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위반사유를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

른 제재범위를 구분하였다고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제한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한 결과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를 제5조제1항제5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놓자고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법률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사법을 보면 제3조에 기술사의 직무범위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또 같은 조항 제3호를 보면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독자적인 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기술사들을 위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 강구,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과정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제기되어서 동 조항이 신설된 것이고요.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 그것도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

**○박세환 위원** 저는 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또 법에 규정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이라든지 실효성 없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전체적인 이 법의 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이런 내용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사법 자체 제정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당연히 국민들로부터는 이것은 기술사만을 위한, 기술사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국민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시각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이고 또 특정 집단의 어떤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조항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호 위원** 2소위원장님께 사소한 것 하나 질의하기보다도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수정안에서 제3항의 제1호 “국가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 게 당연히 국가재정형편에 따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동어반복인데 법률의 자구가 좀 간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국가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기금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예산 배정될 때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재정형편에 따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정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성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세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조정을 조금 해 볼까요? 그래서 오후에 이것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꼭 표결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박세환 위원 그냥 반대의사만 표명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반대의사만 표명하고 그대로 의결해도 좋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제29항,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다만 아까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 수정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권경석 · 김영숙 · 신상진 · 이성구 · 이성권 · 이인기 · 이재웅 · 이해봉 · 주성영 의원 발의)(계속)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 의

원 대표발의)(오영식 · 서갑원 · 김태년 · 우제향 · 김덕규 · 이시종 · 박순자 · 권선택 · 이명규 · 조정식 · 김형주 · 노영민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3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한병도 · 염동연 · 최철국 · 이계안 · 조정식 · 우제향 · 김형주 · 오영식 · 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34.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3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3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3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정부 제출)(계속)

3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1시32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8항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이주영 위원님 장날이네요.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오늘 40건의

제2소위원회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나도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40건의 법률안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는 처음 봅니다. 여하튼 오늘 이주영 위원님 장날입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 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앞으로도 소위에 회부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심사를 잘 해 가지고 보고를 잘 올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의7제1항제4호의 “무단으로”라는 용어는 법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식 용어이므로 “권한 없이”로 수정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의 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서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고도의 안전기준을 설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측면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자금 사용 의무범위를 규정한 제4조의3제4항과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출자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하여 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개정안 제5항이 상충된다고 보아서 제5항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제4조의3제4항의 단서로 수정하여 벤처투자조합 자금의 의무사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하여 자금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의 공장심사 및 제품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험연구원의 지정 취소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라는 문구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고 동일한 표현의 입법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 그 범위를 구체화해서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고통을 주는”이나 “굶주림” 등의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벌칙 구성 요건으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응급조치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 제7조제5항은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 입법이라고 보아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는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포괄 위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법 제4조를 개정하여 보험대상농작물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외의 농작물은 보험대상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존치시키되 보험대상 농작물 조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제1항에 포함시키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보험대상농작물 중 “감”에 관하여 “단

감·떫은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구분 기준이 없고 같은 조항 내에 규정된 다른 보험대상농작물과 규정방식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단감·떫은감”은 “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선명령의 최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제정안에 대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조기에 배출시설의 개선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선명령의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률에서도 개선명령의 최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사안별로 편차는 있지만 개선명령의 이행에 장기를 요하는 사안이 있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한 경우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종전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별칙의 계속 적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적 평가가 변해서가 아니라 관련 규정이 건축법령에 옮겨 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미 조치된 개선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사유로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군사목적은 습지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사목적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심사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 작전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군 병력 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안은 폐지신고를 한 자가 6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대상이 동일 사업자라는 점에서 지위 승계 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지위 승계를 동일한 자로 간주하는 취지의 법문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0년까지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도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무려 40건의 소위원회 법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호우피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나열 순서가 농민들이 절박하게 재해보상을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환 위원** 무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했습니까?

자연재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태풍피해, 우박피해, 그다음에 동상해라는 것은 뭐니까? 같은 상해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얼어서, 서리피해지요.

○**박세환 위원** 동상해는 그런 뜻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박세환 위원** 그리고 호우피해는 어떻습니까? 비피해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박세환 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순서가 이 순서가 맞습니까? 농민이 절박하게 이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법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절박한 것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우피해는 왜 이렇게 맨 뒤에 뒀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것은 앞에 두나 뒤에 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세환 위원** 아니지요. 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호우피해는 조금 보상을 해야 됩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표시 아니겠어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박세환 위원** 제가 장관님 입장에서 이 순서를 나열한다고 그러면 호우피해를 제일 먼저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를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상해면 동상해, 그러니까 동상해가 추위피해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지요.

○**박세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동상해면 같은 상해입니까? 다른 것은 다 피해, 피해 했는데 왜 이것은 끝단어가 상해입니까? 더 위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온피해는 안 들어갑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고온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이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

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도 장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고온피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고온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맞습니다.

○**박세환 위원** 저는 동상해라는 것이 같은 상해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농민들이 보고 여기 추위피해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온피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순서도 농민들한테 절박한 순서대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실 게 아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피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우박이나 동상이나 호우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다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순서가……

○**박세환 위원** 나열순서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든 피해를 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도 법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부터 나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상해라는 것도 단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법규 중에 국민이 공감하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는 그런 처벌법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행정편의적인 처벌규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직업소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직업안정법에 법정 요금 외의 요금을 수령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벌금형

을 선고받아서 5년 동안 직업소개를 못 한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직업안정법 위반 사유를 보면 제46조에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해서 이런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것은 국민들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 지금 18세 이상에 대한 직업소개를 할 때 연령확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 직업소개를 하든지 연령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직장에 직업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령을 확인하지 않으면 협행규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 외의 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의 입법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정말 죄질이 불량한 사람은 직업소개를 하는 분야에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 전체에 대해서 위반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직업소개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중에 윤리·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많은 또 비난 가능성성이 높은 범죄에 한정해서 그런 범죄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도한 입법금지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전형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시사를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사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입법을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위헌적인 법률인데 어떻게…… 위헌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이것이 위헌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지요. 벌금 10만 원을 받았다 그래도 똑같이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럼 만약에 기준요금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놓고 가서 받았다 그래서 1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면 5년 이상 직업소개를 못 하는데 어떻습니까? 타당한 법률입니까?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로서는 예컨대 이 법 위반에 청소년 문제라든지 성매매 등 아주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더라도……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죽 해서 그런 조항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추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위헌까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재고해 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쉽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박세환 위원**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40대, 50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직업소개를 했는데 그게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직업소개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활동하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률조항은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박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자연재해를 나열하는 순서는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의 빈도나 피해의 정도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사 및 동상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환 위원** 날씨피해, 기온피해 이런 식으로 해서 더위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습지보전법에 대해 하나 간단히 물겠습니다.

습지보전법의 입법 목적이라든가 법안의 취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습지보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라든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습지보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지보전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책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특히 행위제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13조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이번에 개정안 또 수정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걱정되는 게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부분입니다.

결국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습지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게 민통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습지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훼손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사실은 풀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의 규정보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현행에는 단서조항에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 단서조항에는 이미 군 병력투입, 작전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수정안에는 그것을 고쳐 가지고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넣어 가지고 실제로는 풀어주는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이치범**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박세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습지보전법을 만들면서 군사목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는 한강하구 지역하고 대암산 용늪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한강하구 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만들 때 국방부에서 대단한 이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이견의 제시로 부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철책선이 쳐져 있고 그 안에 현재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군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이 되면 거기에 있는 군부대가 다 철수를 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만약의 경우에 침투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에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습지보전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사목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습지보전지역의 원형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하고 병력의 이동이나 최소한의 경계를 위해서 갈대를 일부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명확히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문맥도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 군 병력투입이 작전활동의 일환이지요. 작전활동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 병력투입이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작전활동을 한다고 하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로 사실은 습지 안의 대침투 작전, 진지구축 그다음에 평상시 일반훈련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광의의 작전활동 개념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그런 작전활동 일환이 아닌 병력투입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동어반복이 되고 불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표현을 바꿔 가지고 '불가피한' 이렇게 더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의 판단 주체가 결국에는 국방부가 되는 것인데요.

○**환경부장관 이치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미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 국방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한강하구인데……

○**정성호 위원** 우려를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다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시

행령 만들 때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만 돼야 되겠지요.

○환경부차관 이규용 대통령령으로 할 때 가능한 한 최소로 하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둬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직업안정법에 관해서 박세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委員長 安商守 예.

○이주영 위원 다른 법률에도 그런 유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당초 개정안에 10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좀 낮추었는데 박세환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사안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하고 좀 구분을 지어 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5년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어려워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열거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양형 동향을 보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하도록 하되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하고는 기간에 차등을 두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보니까 “이 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한 범죄인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직업소개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것까지도 포함되는데 선원법에 갖가지 벌금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금 10만 원 받았는데 3년이나 5년간 그 직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과잉처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거나 오늘 통과가 안된다면 좀 보류를 해 두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법 체계상 중한 것부터 죽 적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렇게 바꿉시다. 아까 제일 중한 것이 호우, 태풍, 우박, 동상 이 순서로 바꾸어 보지요.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박세환 위원 동상해는……

○委員長 安商守 동상해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 말은 쓰니까 동상해다 이런 것이 사람 동상만 동상이 아니고 식물들도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박세환 위원 농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것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동상해는 그대로 합시다.

○박세환 위원 기온피해로 하는 것은……

○委員長 安商守 기온도 애매하고요.

○박세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인데 원래 이것이 시행령에 있던 것을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인데 그 기온에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물별 기온을 몇 도라고 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박세환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법도 오후로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동상은 일반적으로 씁니다.

○박세환 위원 농민들은 모른다니까요.

○委員長 安商守 그것은 박세환 위원님의 소수 의견으로 달기로 하고 시행령을 정할 때 농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제3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는데 아까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관해

서는 순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40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후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시07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신학용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제출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 등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민간기금화 예정인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공공성과 규모 및 운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환원하고 기금을 보다 미래지향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일부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

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자구정리한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상정된 의안 69항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4.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6. 教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7.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4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박상돈·배기선·곽성문·배일도·이원복·안택수·정두언·정진섭·이경재·유재건·신상진·정동채·남경필·이성구 의원 발의)**

(12시11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전 내내 기다린 부처들을 생각해서 오전에 법안들을 좀 마쳐 놓고 오후에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제4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위원회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둘째, 공익위원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후 10~15일 정도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이 미흡한 설정이어서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하여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둘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등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넷째,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되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서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그 벌칙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나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 시행시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중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줄였습니다.

셋째,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넷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칙 제2조는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교원 노사관계의 교섭질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시행규정의 효력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기관의 육성과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훈련법인 해산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은 일정금액 미만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훈련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탁제한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둘째, 출연제산에 대한 엄격한 처분제한을 받는 훈련법인의 투자여건 마련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훈련법인에 대한 해산의 특례를 마련하되 그 재산은 10년간 훈련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둘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회의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취지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법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상무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상무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방법에 대해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와는 달리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차배제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의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와 관련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미 개정된 법안의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인 반면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7년 4월 1일이므로 앞서 개정된 내용을 현행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 및 소관 부처 등은 보다 면밀한 법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별칙규정의 정비 관련입니다.

안 제31조와 관련해서 별칙에 관한 입법례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는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지명령 위반 별칙 삭제 및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 쟁의행위 및 당해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지명령 위반까지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안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삭제가 처벌의 부당함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으로 삭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칙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안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취지에 비추어 “명령”을 “통보”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별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관계 법조문의 해석상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적정한 유지·운영수준 등을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그 체결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공중의 생명 등이 문제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적정한 유지·운영수준 등을 당사자의 협정에 무제한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

를 현저히 벗어난 협정에 의한 쟁의행위는 제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정에 따른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법문의 자구를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리한 것인데, 당해 조항이 최근에 이미 개정되어 공포·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구체명령 이행의무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의 구체명령을 하거나 당해 구체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명령은 그 자체로서 당해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점, 구체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행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자구정리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 해지·훈련과정 인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명령을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외에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정요구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입법취지 등에 맞추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도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검사결과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재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착 전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5쪽,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점검결과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결과 제출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제재조치가 없는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주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인 위원님, 다음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인 위원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임종인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복수노조 금지를 3년 연장한 것은 이미 3년 안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복수노조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는 한국노총만 인정하고 복수노조를 중앙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임종인 위원 민주화된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복수노조 인정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노총들하고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특히 삼성의 이익이 관찰된 것이다, 현대 같은 데는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인

데 실정으로 보나 국제관례로 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진전으로 보나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감정을 볼 때 노조가 하나가 있어도 복잡한데 2개, 3개 있으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 법안 심의를 해 보는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모처럼 노사가 합의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기도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3년 유예를 해 놓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행하자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임종인 위원** 국민감정과 노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전체 제대군인의 의사를 혼자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법으로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 하나만 인정한다고요. 옛날 한국노총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민주적이다, 군인들이 제대해서 재향군인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나 이런 강력한 단일 노조가 있는 데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용자 측에서 복수노조를 해 달라,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조가 너무 강성이고 설사 복수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노조가 올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것을 풀어주시고 대신에 전임자 급여 금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크게 봐서 기업들은 복수노조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기업의 어떤 경제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좀 유예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부분과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항공운수사업과 그다음에 혈액공급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임종인 위원**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장에 전에는 직권중재가 있었는데 이것은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임종인 위원** 이것은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권중재 제도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니깐 노동부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 파업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파업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무기, 노동자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운수사업을, 항공운수사업이라는 것은 아시아나, KAL 이런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에 아시아나 조종사들이나 KAL 조종사들이 파업한 것에 대해서 귀족노조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족노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랜 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건강, 하늘에서 일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수적 언론에서 귀족노조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막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병원과 항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화를 진전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지금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노사가 서로 일종의 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직권중재 제도가 없고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다 인정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기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만일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완전히 파업권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근로는 모든 나라에서 거의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노동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에 저희가 합의할 때는 모든 파업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것을 줄여서 파업근로자의 반에 한해서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우리 현실도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균형을 맞춘 입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해서 별칙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사전통보기간을 줄이고, 경영상 정리해고할 때는 사전통보기간이 종전에는 60일이었는데 50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삭제하라는 것은 바로 사용자한테 부당해고를 허용 내지 종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전통보기간을 좀더 늘려주는 것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각 행정부처 중에서 재경부나 산자부나 건교부는 개발업자나 기업주를 위해서 일해서 그들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개발업자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부가 앞장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이러한 법 개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노동행정도 많은 혁신과 개혁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노사라는 대립된 관계를 고려해 놓고 혁신하고 개혁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경제의 효율성도 고려해 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균형 있는 개혁, 균형 있는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저희들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별칙 조항을 없앴다고 하니까 모든 해고에 대해서 별칙 조항을 없앤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지금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해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별칙 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번에 없앤 부분은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를 했을 때 일단 부당해고가 되면 시정을 시키고 시정을 명하지 않으면 별칙을 가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해고했다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바로 별칙을 부과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합리화시켜서 일단은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정말 기업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 시정명령을 명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고소·고발해 가지고 별칙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입법례가 아니냐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장관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됐는데요. 그러면 항공운수사업 전체가 필수공익사업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항공운수, 특히 됩니까? 항공사……

**○노회찬 위원** 항공사……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노회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다 시행령이라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무다라고 규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법률로서 전체적인 규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노회찬 위원**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원래 전체 사업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 예를 들면 일반인의 건강안전이라든가 공중에 위해가 되는 경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운수사업의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이 되 거기에서 필수유지업무만 파업을 못 하도록 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이미 법률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지금 대체근로가 일정하게 허용되는 그 범위로서는 필수공익사업 전체가 되는 것이고, 항공운수사업 전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노회찬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노회찬 위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든 나라의 입법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쓰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왜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왜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권중재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직권중재를 통해서 국가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항공산업은 정말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데 만일에 이런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일단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회찬 위원**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파업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권중재 제도가 문제가 됐던, 국내는 물론이거나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의 직권중재 제도

가 문제됐던 것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파업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곳에 직권중재라는 방식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으로 쏴서 문제가 되니까 앞에 소음기 달아 가지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공운수사업이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항공운수사업 전체에 파업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무수한 외국계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들을 보십시오. 거기의 운항 승무원들을 보십시오. 그들 나라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는 곳은 항공교통관제,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 조종사하고 우리나라 조종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항공운수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성격비중과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성격 비중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을 왜 우리나라 항공운수사업 관계자들은 박탈당해야 되느냐, 제한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다른 나라의 예를 알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나라에도 필수공익사업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ILO 규정에 의하면 에센셜 서비스(essential services) 그래 가지고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서비스, 그중에서도 미니멈 서비스, 아주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보호 차원에서 그 파업 제한이 유지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기업의 하역서비스, 지하철 서비스, 여객·상품운송 서비스, 철도 서비스, 우

편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봤고 항공운수 사업은 이에 준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참 대단히 놀라운……

지금 직책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입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우리 노사정책국장께서 인용한 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 규정을 따르실 생각이 있다면 이 법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 법에 보면 석유·은행·방송·조폐·우편·수도권 교통 등에 관해서는 필수적 사업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업으로 예시까지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인용한 그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법에 보십시오. 수도권 교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저희가……

**○노회찬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의료·전기·수도·전화·항공교통관계, 이것을 필수적 사업으로 예시하고 있어요, 항공교통관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항공교통관계를 제외한 항공운수사업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ILO는 선박운송사업, 여객 및 상품운송사업의 경우에 최소 서비스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민에게 최소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한을 좀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경제라든지 공중·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운송수단 간의 대체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포함시켰고 실제로 노사정간에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노총……

**○노회찬 위원** 지금 노사정 일치를 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노동 쪽도 항공운수노동조합 전체를 다 대변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니, 그런데 민노총도 처

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거든요.

**○노회찬 위원** 아니요, 하여간 이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바는 아니고……

저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자꾸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KTX가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공항에 운항하는 비행기 편수가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목포는 하루에 1편 다닙니다. 광주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비행기가 파업하면 KTX 타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선이 파업하게 되면 외국 항공사들도 다 같이 파업합니까? 외국 항공사들로 대체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이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경험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파업했을 때 사실 국민들이 얼마만큼 걱정하고 우리 경제도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사실 세계화 시대에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나 국민들이 정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올인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파업에 대해서 제어 수단이 없다면 실제로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제어 수단으로서 이것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제한은 온당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국내 조종사노조를 통해서 국제조종사노조협회에 알아본 결과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운수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이처럼 제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제탑 요원들을 제외하고서 승무원과 조종사들의 파업권을 이런 식으로 제약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독 왜 우리나라만 제약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꾸 과거의 파업을 가지고 경제에 큰 파탄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파업하면서 흑자 본 것 아

십니까? 파업하면서 적자 노선들도 다 결항해 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익을 더 봤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노동 기본권에 관련된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법사위에서 소위에 회부해 가지고 좀 심각하게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많은 심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민노당도 같이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민노당의 단병호 위원께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처리하자 해서 사실상 합의처리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노회찬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록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이것 표결했지 않습니까? 단병호 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표결처리를 안 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반대 발언까지 한 것이고, 이 문제를 갖다가……

그리고 저는 접니다. 저는 법사위원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이 법안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우리 동료 법사위원들께 이것은 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한 조문 조문을 따져서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사선진화 로드맵은 한 조항 한 조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한꺼번에 함께 처리한 것이라고요.

그 논의과정은 노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은 노동자에게 약간 불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국제기준을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도 완화해 가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는 직권중재 제도라고 하는 파업권에 있어서 원천적 봉쇄 제도를 없애고, 그것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나머지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한 겁니다.

원래 노·경총 간에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항공운수사업·헬액공급사업을 포함해서 증기·온수사업, 폐하수처리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증기·온수사업과 폐하수처리사업은 여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빼기로 결정을 했고요.

항공운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노회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 짓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충분하게, 그리고 서너 차례의 독해와 토론을 거치면서 항공운수사업은 사회적 분위기상, 두 가지는 빼더라도 이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조건 아니냐, 지난번 KAL 또는 아시아나의 파업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항공운수사업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입구를 풀었기 때문에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가서 뭔가 장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필수유지업무로 뒀고 또 하나는 대체근로로 뒀는데, 대체근로는 전면적으로 다 막는 것으로 노·경총 간에 합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입구를 푸는 것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체근로도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파업 참가자의 50%는 풀어 주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장치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를 떼어서 이거 왜 노동

자에게 불리하게 됐느냐 이렇게만 주장을 하면 이 법 전체를, 큰 우산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종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전 또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깊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낱낱의 하나의 건이 왜 후퇴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진전된 것과 후퇴한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선진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진보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위원도 논의과정을 통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표결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반대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표결하지 않고 합의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희찬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뭘 하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기본권을 축소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협상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협의가 있었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보다도 더 축소하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것이 선진화입니까, 인권지수를 낮추면 선진화입니까? 그런 선진화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선진화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예, 말씀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노동부장관께, 다른 범인데요. 이것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그것을 3년간 미룬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교섭을 청할 경우에 통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어서 일단은 유예를 좀더 하자 해서 유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이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그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연동돼서 하는 것 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임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복수노조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임자 임금을 전혀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중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전임자 문제에 대해 전임자 임금을 없애자라고 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못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노·경총 간에 합의해서 하나씩 양보하는 조건 속에서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노사 간의 자율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이 법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 현장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대단히 큰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소위로—법사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겠습니다마는—넘겨서 만약 올해를 넘기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중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9항까지 대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더 대체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직권중재 제도가 저도 생각하기에 노동 3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위헌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폐지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찬성을 하고, 맞추어 가지고서 제안설명 때도 나왔지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게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한다고 하면 그게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에 작용할 수 있겠지만 100분의 50 정도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정부분 정도 숨통을 트여 주는 면에서는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위헌이다라고 저희가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노사의 균형과 또 산업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꼭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수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2002년에 개정 전 법률의 필수공익사업범위도 넓다고 해서 개정을 우리에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없던 항공까지도 집어 넣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요. 만약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겠다면, 우리 다수 법사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이 자리에서 표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지금 표결을 원하는 게 어느 법안입니까?

지금 법안이 제42항부터 제49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노회찬 위원 제43항, 제47항, 제48항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제43항, 제47항, 제48항, 이 3개입니다?

○노회찬 위원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우선……

○노회찬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제44항, 제45항, 제46항 그 세 가지입니다. 제44항에서 제46항까지……

○委員長 安商守 이것을 표결을 원합니까?

○노회찬 위원 예.

○委員長 安商守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다수 의견이 내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소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같으면 또 소위원회로 넘겨서 할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아마 법사위도 오늘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또 내년 되면 아마……

아까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장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하고 복수노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냥 표결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써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표결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거의 안 부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 제42항 그다음에 제43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이 5개의 법률안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 세 법률안에 관해서는 표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기로 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부치기 전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아까 토론 다 한 것……

○**임종인 위원** 아까는 질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려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토론하시겠으면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판단이 충분히 됐는데…… 말씀하세요.

○**임종인 위원** 나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원식 의원님은 그중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 있고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生存權)를 가진다라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전,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통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매우 나빠졌습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 매우 나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8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

니다. 그런데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도 보호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법안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총자본의 공세에 우리 노동부가 양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 노동자들 중에서 불과 12%만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88%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도움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2%의 노동조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복수노조 금지를 3년간 연장한 것은 세계 노동기구에서도 수차례 복수노조를 인정하라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법까지 이미 고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동부장관님께서는 국민감정을 이야기하셨고 노사가, 특히 사쪽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측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을 다 보장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상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노조가 경쟁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 법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필수공익사업장을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에 확대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을 가지고 귀족노조니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체노동자들도 사무실 노동자와 같이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이지 육체노동자들은 늘 저임금 속에서 허덕이는 것만이 올바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권중재를 폐지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합법 과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한 것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한 것, 그다음에 부당해고 처벌규정 삭제한 것 이것도 또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매우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삭제하면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법안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의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충실한, 그리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미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표결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4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체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4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참, 이것은 소위원회 안 거친 것이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일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기재한 것처럼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수정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국회법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호명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노회찬·임종인 위원 두 분만 반대하셨습니다.

**○임종인 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이름을 다 올려서 속기록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商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앉으세요.

**○임종인 위원** 앉을 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委員長 安商守** 뭐를 강요하나……

**○임종인 위원** 아니, 이것은 이러기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언제 그런 결의를 했나요?

**○임종인 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됐어요.

표결 결과 재석 12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의결하는 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의결하는 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46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하는데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의결하는 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 것은 다 끝났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업안정법이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아, 직업안정법……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지난 11월 24일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결의에서 인권위원회 예산을 완전 삭제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3대 3 대 3으로 해서 통과됐다고 했는데 누가 3인지, 누가 또 다른 3인지, 또 다른 3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아, 이름이 이렇게 속기록에 나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구나. 이것은 온 국민에 대해서 나중에도 예의가 아니구나’ 이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안건인 경우에는 표결을 하기 때문에 표결한 경우에는 이름을 위원장님께서 호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공문으로 올려서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113조를 보면, 제112조제2항을 보면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직권 뛰뛰해서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호명을 안 해 주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듣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예, 이름을 호명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인 위원** 아니, 저번에 결정을 안 했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임종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할 것입니

까?

○**委員長 安商守** 우리 간사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4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5시03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좀 서로 협의해 보라고 그랬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에서……

○**委員長 安商守** 아니, 결과는 우리 소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 또 청소년보호법 등등의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상당 기간 업무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그 규정이 당초 개정안은 10년이었고 저희 소위에서는 너무 과하다 해서 구분 없이 5년으로 낮추는 그런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5년도 사안에 따라서는 너무 과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위원님들 다수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현행법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들을 다수 개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들은 또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그 부분은 현행법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만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주영** 노동부에서도 동의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노동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해 주시면 아까 박세환 위원님의 제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다시 정부 입법으로 한번 또 제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은 수정한 대로, 소위원장께서 수정 발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각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5시05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어느 분이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소위원회 거친 것인가?

○**입법조사관 이정화** 예.

○**委員長 安商守** 누가 말씀해도 관계없잖아요. 해 보십시오.

○**김동철 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문광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한 결과, 이 법안에서 허용하는 경품은 일반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서 게임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 자체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소규모의 경품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는’이라는 문구를 더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소위원장님도 이것 다 동의하신 것입니까?

○**소위원장 이주영** 저는 지금 말씀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또 문광부에서 문광위원회의 이의가 없겠다 하고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문은 있을 수 있는데 정부 측 의견도 좀

듣고 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문광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저희들의 본래 취지도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허용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이 수정안에서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는’이라고 삽입했는데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할 경우에 좀더 나아진 점은 뭐가 있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게임업주가 어떤 것을, 완구가 됐건 문구가 됐건 주는 것이 아니고 게임기 자체에 있는 것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행성이 아주 대단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동전을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완구나 문구를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위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서 이 정도는 단순한 오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에 와서 극도로 사행성이 높아진 이유가 바다이야기가 최초로 상품권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이 극도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1만 원을 넣고 게임하면 이겼다가 졌다가 아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300원 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품을 바꿨는데 바다이야기는 한 번 이기면 이긴 대로 상품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회전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상품권은 누가 넣었습니까? 사실 상품권은 그 게임기를 살 때부터 그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 밖에서 경품을 주든 게임기를 통해서 주든 결국 게임장 업주가 그 물건을 사다가 넣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수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볼펜이 나오더라도 그 볼펜을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볼펜을

갖다 주면 다시 돈으로 바꿔 주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전에도 곰 인형이나 이런 것도 보면 집에 가서 그 곰 인형을 인형으로써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의 교환 수단으로 삼아 가지고 다시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같은데요.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된다는 점만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우리 노회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물론 노회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게임은 게임대로 즐기고 게임의 결과로서 어떤 상품권이나 다른 경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품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허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게임의 내용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대가로서의 상품권이나 경품을 의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경품 그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노회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권을 지금 수단으로, 경품으로 걸었는데 바다이야기 게임을 해서 상품권 타 가지고 그 상품권을 교환해서 상품을 산 사람은 거의 없고 그것을 환전해서 다시 게임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만일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배출하는 것이 상품권이 아니고 볼펜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보는 겁니다. 특정 볼펜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배출하고 그것을 옆에서 환전해 가지고 또 게임을 하게 만들었으면, 바다이야기는 상품권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상품권일 수도 있고 볼펜일 수도 있고 지우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기계에서 배출되어서 그것을 환전해 가지고

게임을 하게 만드는 그 구조 때문에 이것이 사행성이 극도로 높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다이야기에서 게임 이용자가 즐기는 것은 상품권이나 다른 어떤 경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즐기면서 그 대가로서 무슨 상품권이나 다른 경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품 그 자체를 게임 대상으로 해서 즐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자, 그러면 이게 반대의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오늘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전체회의에 계속 시켜 놓고……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양해를 하신다면 조금 이해를 돋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베팅성 게임이 경품하고 관련되어서 그럴 염려는 지금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전체이용가 게임 중에서도, 전체이용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전 게임을 이야기하지요. 그중에서도 뽑기 게임용, 그러니까 학용품이라든가 인형을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뽑기로 하는 게임류에 대해서 경품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용품이나 인형을 꺼내 가지고 옆에서 환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환전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또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행성이 새롭게 대두되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위원** 아니, 환전은 그전에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소위원장 이주영** 환전이 그전에는 업장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금지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소위원장 이주영** 그래서 환전소가 업장 바깥에 있어서 환전을 밖에 나가서 해 왔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은 그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그런데 지금은 환전 행위 자체가 게임장 내외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 안 되도록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그러니까 경품 가지고 환전을 해서 계속 이용한다는 우려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뽑기를 하는 게임은 대여섯 살의 아주 어린아이, 10세 미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저희들이 소위에서 그 점을 좀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환전 자체가 게임장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서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품으로 완구류라든지 문구류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물품 정도를 가볍게 주는 것은 괜찮겠다고 판단되었고, 또 그것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소위에서……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렇게 나온 수정안을 가지고 오늘 그냥 통과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주영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말씀하십시오.

○文病호 위원 장관, 원칙은 경품을 걸면 안 되는 것으로 법문에 해 놓고 단서조항에서 굳이 이렇게 청소년이 하는 게임에 경품을 줄 필요 있나요?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게임산업 진흥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모든 경품을 금지한다고 할 경우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야말로 오락으로서 하는 게임마저도 모두 다 금지하면 저희가 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소위 문방구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오락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文病호 위원 아니, 어린아이들이 돈 내고 그냥 오락하고 말면 되는 것이지, 접수 잘 나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굳이 문구류나 완구류 꼭 하나씩 줘야 됩니까? 그래야 게임이 진흥되나요? 나는 이 단서조항 삭제…… 불필요한 걸 넣은 것 같아.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실제로 그런 게임류가 있는데 그것을 금지했을 경우에……

○文病호 위원 불법화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예를 들면 그 업

자들로부터 위헌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전에 대법원에서 2000원 이하의 경품을 금지한 사례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몇천원 정도……

○委員長 安商守 그것은 아까 오전에 김동철 위원이 제기해 가지고 지금 절충안이,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文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결 하시든지요.

○정성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수정안보다도 원래 소위 수정안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서조항에다가 경품의 종류에 허용되는 것을 팔호해서 완구류, 문구류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미 전체의 수정안에서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공방법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게 더 문제 가 있는 것이고, 원안대로 해 가지고 정말 문광부에서 지급기준이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직접 배출되는 형태가 있는지 다른 어떤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소위 수정안대로 두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문광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이주영 어떻게 보면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느냐, 아니면 게임물 바깥에서 주느냐 하는 것도 제공방법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희찬 위원 소위 수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속 시켜 놓고 조금 더 연구했다가 하면 안 되겠어요? 내년 2월에 해도 되잖아요. 급합니까?

○정성호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김동철 위원 이것은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인데 지금 우리 이주영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것을 밖에서 게임 업주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행성이 아주 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물에서 직접 뽑는 것만 허용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제공방법의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지능 발달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만 허용한다는 것이지 어린애들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게임 업주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공방법이 아니에요.

#### ○노회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문이 그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훤한 유리로 되어 있는 데 안에 들여다보면서 인형을 하나 뽑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게임물에서 직접 배출되게 해 놓으면 상품권 나오듯이 업주가 계속해서 간단한 볼펜 같은 것을 사서 채워 놓고 하나 걸릴 때마다 툭툭 대가로 경품이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하는데 전체회의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다른 유형의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법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위 수정안으로 가서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우리 김동철 위원님하고 노회찬 위원님이 잠시 더 논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논의를 조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오늘……

#### ○선병렬 위원 표결하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아니, 이거 표결할 내용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조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처리하는데 두 분이 대화의 시간을 좀 갖도록, 그리고 장관님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눠 보십시오.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건이 많은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좀 � lett갈립니다.

####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 발의)(백원우 · 정화원 · 정청래 · 장향숙 · 최

재성 · 김덕규 · 윤호중 · 강기정 · 양승조 · 장복심 · 이광재 · 김부겸 · 안민석 의원 발의)

#### 51. 기초노령연금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강기정 · 강창일 · 구논희 · 김낙순 · 김덕규 · 김동철 · 김부겸 · 김선미 · 김영주 · 김우남 · 김재윤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형주 · 김희선 · 노웅래 · 노현송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병석 · 박찬석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혜석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계안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석현 · 이시종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임종석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정봉주 · 정성호 · 정장선 · 정청래 · 조경태 · 조성래 · 조일현 · 주승용 · 지병문 · 최규성 · 최규식 · 최철국 · 한광원 · 한병도 · 홍미영 의원 발의)

(15시23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에 좀 의논하십시오.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예, 강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연내에 꼭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논의하다 보니까 고령자빈곤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제정법입니다.

내용은 65세 이상 된 고령자들에게 국민연금 지급액의 평균치의 5%, 원래 제 법은 액수로 10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률로 해서 5%를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좀더 보면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도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의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약 20회 소위를 했었고 이 기초 노령연금법안도 세 번 이상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대로 오늘 꼭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두면서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2조의4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의 제32조의3과 비교해 볼 때 규정체계상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약간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중 주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규정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제2조·제6조 및 제7조 등 개별 조문에서 약칭의 형식으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나 용어정의는 일반 입법례에 따라 총칙적 규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두는 것이 법률의 이해와 편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조를 신설하여 수급자, 수급권,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의 미지급 연금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연금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청구권자의 순위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지급순위 및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없으므로 지급순위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의 환수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경로연금에 관한 현행 노인복지법의 예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적은 금액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환수금액보다 환수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를 신설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실질적으로 수급 금품의 압류를 금지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는 점과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를 보호하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러한 보호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권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품의 압류도 금지하도록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국민연금법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대선, 내후년 총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살펴볼 때 자칫 연금개혁에 관한 사항이 선거쟁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그 잠재부채가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치권의 부담도 또한 증가되어서 결국은 이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지연에 따라서 제도개선 사안들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제도개선 사항들이 추가 재정 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 이주영 제2소위원장님께서 소위에서 국민연금법에 관한 심의를 할 때 기초노령연금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같이 함께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고 지난 번에 소위에 회부했던 국민연금법까지 통과해서 이것이 착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음에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장관님,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박세환 위원** 기초노령연금법안인데요, 국민연금과는 달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이것은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과의 전체적인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국민연금과는 제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인, 말하자면 빈곤 고령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속수무책인 점을 보완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해져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국민연금제도의 한

계를 보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고 제도 자체는 별개의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제도적인 연관성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산정기준을 현행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연동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연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이 두 법은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 보는 것은 별도의 법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정서대로 국민연금법 중에 한 개의 장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국민연금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체계가 과연 이것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기정 의원** 위원님,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맡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법, 지금 제안드린 법은 재원이 정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신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이 다른데 한 법에 넣으면 어떠냐,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맞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법을 국민연금법을 포함해서 올해 연내에 통과시키고 내년 2월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법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부대의견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2월 임시국회 열리면 제일 1번으로 처리하자 이것이 여야 합의된 사항인데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향후 5~10년 동안 이것을 하나의 법에 넣을지 어떨지…… 연금의 근원적인 틀을 흔드는 문제니까 그때 논의하자 그래서…… 이 법안은 올해 내로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착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을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저는 법이라는 것은 국민은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도 다르고 행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민들 대다수가 다 동일한 연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민연금 개념 속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단일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차후에 합친다, 합칠 계획이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 법으로 하나 두 법으로 나누나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법이 2개라서 또는 1개라서 혜택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법을 합치는데 약간의 난관을 느낀 것은 국민연금은 연금에 기여한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이고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유 여하를 가리지 않고 65세 이상 연세드신 분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친 소득환산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논리상 상이한 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는 것이 오랜 기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내린 결론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박세환 위원** 저는 국민의 입장은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떤 법체계에 대해서 이것을 찾는다면 최소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장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하나의 법률 속에 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어르신들은 이미 동네 경로당에서 얘기도 듣고 뉴스도 보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르면 장애

인 문제는 고려대상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를 배제하거나 특별히 포함시킴이 없이 일반적인 제도로 설계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결론적으로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내용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초기에는 60%가 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60%라는 대상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향후에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다 예단해서 볼 수 없어서 일단 기준선을 60%로 해 놓고 향후의 상황이나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60%라는 한계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대상자를 60%라고 설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60%로 설정한 근거는 저희가 금년에 65세 이상 노인가구 1만 7000세대를 표본조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타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선을 설정하고 동시에 지급대상과 비지급대상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곳에서 지급대상을 끊어야 실무적인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60% 정도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기준선으로도 그렇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60%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다음에 이 법 내용을 보면 일정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금을 못 받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분들은……

**○주성영 위원** 재산이 얼마쯤 되면 받지 못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것은 시행령에 확정을 아직…… 입법이 되면 시행령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득 분포를 봐서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60% 선에 맞추도록 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이상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연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데이터상으로는 60% 정도 지급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주성영 위원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재원의 10%~60%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물론 지방정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지금 10%에서 60%까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비율은 그 지역의 고령자 숫자나 고령화율, 지방재정 자립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10%까지 내린 것은 이 법을 만들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의 문제를 많이 고려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조치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우리 경제단체에서는 좀더 근본적으로 이 안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당장 3조 원에 달하는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주성영 위원 막무가내식이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사실은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기초연금법을 내놓으시고 하도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월 15만 원 선에서 시작하자고 늘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따져 보고 재정적인 여력이 닿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런 수준입니다. 2008년도에 2조 4000억 원, 2009년도에 약 3조 2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재원은 부분적으로는 현행 경로연금을 폐지

하는 데 따른 재원이 약 3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거기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재원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제가 몰라서 장관님께 여쭈어 보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기초연금법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기정 의원 그것은 대안으로서 내서, 표결처리해서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안하고 같이 표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안을 제가 하나 냈고 김병호 위원님이 대안을 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강기정 의원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연금 급여율이 5%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 높여 나가야 되는데 목표 급여율 15%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급여를 높여 나가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로 처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강기정 의원 두 가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 수정안 3조에 보면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1조(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3조를 신설하고 노력에 대한 정부의 의무조항을 담고 그리고 부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결의를 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든 지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제반 특수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기초노령연금 액수의 최종 목표치가 15%가 적절한지 이런 것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를 두어서 논의에 들어가면서 10%가 될지 15%가 될지, 당시에 여러 NGO나 관련 단체에서 10%도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비율을 법에 명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노회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목표 급여율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그것

을 다시 법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강기정 의원** 부대결의 내용이 그런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제안 취지를 볼 때 상당히 건설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로부터 계속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그런 연령대에 이른 장애인들,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역시 주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노령장애인 말고,—노령장애인 이야기 연령에 위해서 여기에 당연히 포함될테니까—우리의 장애인 복지 현실에서 생계유지가 잘 보장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들, 물론 다른 기준을 또 따르겠지만 이런 장애인들이 왜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다를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강기정 의원** 애초부터 이것은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 생기는 고령자 빈곤대책이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노인수발법 등 여러 법을 다를 때마다 장애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장애인 관련 문제는 통째로 자립자활 문제로 새롭게 독립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 가지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등에 장애인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충설명은 장관님께서 좀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안을 보셨겠지만 내년에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0만 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인상을 했고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아주 큰 폭으로 몇 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이나 생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노인 범주, 어린이 범주에 들어가는 쪽들은 그 제도 속에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고 나머지 문제들은 따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취업 대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아까 강기정 의원님께 질의하신 것입니 다마는 입법이라는 것을 긴 정치 과정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5% 정도 선에서라

도 기초노령연금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를 15%까지 올리고 지급범위를 80%까지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시점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이 법을 이렇게 해 두고 향후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정당들이 다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져 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향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노회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 유시민 복지부장관님과 강기정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2003년에 제출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작년, 올해에 걸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제도 고려를 했고 연금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현재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법사위까지 왔는데 이번 한 해를 넘긴다고 하면 내년에 가면 또 상당히 불투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우선 법이 금년을 넘기게 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것을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당장 2008년에 들어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들을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만들어야 하고 내년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지급받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산과 금융자산, 소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위한 실무적인 기구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제가 말씀

드려서 대한민국은 정치 기상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 때 이렇게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말 앙망하는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재정안정화 문제나 고령 빈곤자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 중에 50가지가 합의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과정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당하다고 느꼈던 50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보면 먼저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 문제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해서 진작 합의해 놓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안으로 왔습니다마는 20여 분이 낸 제도개선 사항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빨리 구성되고 그래야만 근본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또 여러 특수적 연금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서 매우 고심했던 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라든가 우리 나라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2008년부터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기초연금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연금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니까 조금 이의가 있어도 오늘 통과해 주시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오늘 안건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까지도 상정을 해서 일괄 처리를 해 주셔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국민연금법이 지금 소위원회에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원래 기초노령연금법하고 국민연금법을 같이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빨리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소위에서 다룰 때는 기초노령연금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는 대로 국민연금법도 같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왕 처리를 해야 될 건이고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내 처리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지면 여러 저항도 있고 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있는 연금법을 같이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오늘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말씀하세요.

**○주성영 위원** 우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확인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한나라당에서 낸 안 하고 민노당에서 낸 안은, 현재 사실상 정부안을 강기정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안보다 수혜의 폭도 넓고 수혜의 정도도 어르신네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안이 무시되고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표결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장관하고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65세가 안 되더라도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연금 액수를 지금 이 안보다 더 높이는 문제,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60%의 대상을 더 확대하는 문제, 오히려 우리 소위에 회부를 해서 폭넓은, 한나라당 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원안에 가까운,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근본적인 복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뛸 막아 가지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를 해서 좀더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국민연금법하고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점은 문병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이론이 있으면 소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상민 위원** 주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법사위의 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 법사위에 이미 회부되었다면 어떤 위헌·위법성,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 이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사위 심의 권한에 맞게끔 이 법안에 대해서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선병렬 위원님!

○선병렬 위원 저는 이 법은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하고 관계없이 일단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의문을 던지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돼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만큼 비중 있는 판단을 가져오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견해, 각 정파 간의 견해차이 이런 것들이 법사위에 와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관계단체나 관계 기관, 정부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의 견해에 우리 법사위가 자꾸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늘 통과시키고 국민연금법은 바로 다시 소위를 해서 하든가 따로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것하고 국민연금법하고 같이 병합해서 오늘 처리하자고 하면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국민연금법도 저희들이 소위에서 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이주영 위원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안하고 같이 처리하자 해서 저희들이 양해하는 측면으로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안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주영 소위원회장님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서 그렇게 양보했던 것이지 꼭 같이 심의하자 이런 측면은 아니었고 오늘 논의를 해 본 결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이 자리에서 통과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성영 위원님께서 한나라당의 안이 반영이 안 됐다 또 한나라당이 수급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을 증액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재원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의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해야지 법사위가 법사위 권한의 범위를 넘는 그런 쟁점을 가지고 소위로 넘기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마지막으로 이주영 위원님 말

씀을 듣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민연금법이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을 때 기초노령연금법이 곧 우리 법사위에 후속 법안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상태에서 소위에 회부되었고 그 문제점들을 기초노령연금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하고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생적인 그런 연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금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또 법을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같이 심사하는 것이 맞다……

○선병렬 위원 보건복지위에서 해야지 법사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권한이 없어요.

○이주영 위원 선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지난번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때 한 40개 법안이 더 되지요. 계류된 법안들이 있고 해서 통과시킨 것만 40개 법안이었는데 하여간 많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소위에 넘어오면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그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한 상태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계류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이 오늘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대상의 적정성이라든지, 노회찬 위원님이나 주성영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전문위원께서 문제로 지적해 놓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수인일 경우에 현재 제정안에 나와 있는 그 규정만으로 청구권자의 순위를 가려낼 수가 없다, 또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정기준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부당이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 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연금과 유사한 다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들의 경우에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것하고 궤를 같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자체의 양도 또 담보, 압류를 금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는 금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금 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까지 신설해 온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어찌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연금법하고 달리 지금 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형평성 있게 체계를 맞춰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나 보건복지부장관님 또 제안하신 강기정 의원님께서 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는 것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소위를 열어 가지고 지금 지적된 문제들 또 국민연금법에 지적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법사위를 한 번 더 열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심의를 위해서 따로 임시국회 안에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내대표, 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다뤄야 될 그런 사안들을 그냥 가버리 여기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를 빨리 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가지고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1항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것은 그렇게 넘기기로 합시다. 위원장이 그렇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법안 다 협조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2 소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여는 것으로 권고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안민석 · 염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 의원 발의)  
(계속)

**53.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

(16시07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2항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이상 2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계속)

(16시07분)

○委員長 安商守 제52항, 제53항을 심의하기 전에 아까 보류되었던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님이 제17항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28조제3호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이 삭제됐을 때 아까 문광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합법적으로 허

용되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것들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위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제3호 단서를 없앴을 때 불법으로 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대로 그냥 수용해서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안을 받아들이고 또 시행령 만들 때 그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 김동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안민석 · 염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 의원 발의) (계속)

53.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6시10분)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52항, 제53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교육부총리 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委員長 安商守 먼저 의사일정 제5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태이며 병역법과 병합심사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던 법률안이므로 잠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성권 의원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되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박재완 · 선병렬 · 양승조 · 염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5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염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5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선병렬 · 양승조 · 염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57.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염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58.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16시12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5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설치법과 정관을 전부 살펴본 결과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정관에 여러 가지 활동범위, 사업범위를 정해 놓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이것을 설치법에 반영해서 그런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5개 법률이지만 내용은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성이 큰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 추구를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 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칭에 대한 대비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대한주택공사법이나 한국도로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등 여타 유사한 공적수행기관에 대한 법률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상수 위원장, 이주영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여타 공적수행기관들이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이나 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 통제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가 수행하는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등 핵심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의 범위를 공사의 주된 사업이나 공익적 요청이 큰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등기촉탁의 범위를 공사의 사업영역 중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공사가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항목 중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과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관에서 규정함으로 인해 이것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의 설립근거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해당 사업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사업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양해하신다면 앞서 밝힌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5개 법률안을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주영**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6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사일정 제

55항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병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박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문병호 위원** 박상돈 의원님이 좋은 법안 많이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제14조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요.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 주무장관이 재경부장관인데 이 법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유재산법 적용범위 조항에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 국유재산법하고 상충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서 개별 장관들이 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해 버리면 국유재산법의 의미도 멀게 되고 국가의 전체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주영 위원,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돈 의원** 현재도 모든 국유재산을 재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리 자체는 건교부장관이 하고, 건교부장관이 무상대부할 때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 법 송부할 때 재경부하고 상의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문병호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호 위원** 예, 이 부분이 왜 타당한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국유재산 관리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총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법에서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뿐만 아니라 항만법이랄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저희가 이번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재정경제부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문병호 위원** 저는 개별법에 이렇게 국유재산에 관해서 처분권을 주게 되면 국유재산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의원** 공익적 필요 외에는 사실 무상대부하는 전례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문병호 위원** 나머지는 됐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환 위원** 저도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을 공항 안에서 할 때는 공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범위를 확장한 것인데, 전기통신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박상돈 의원** 기본적으로 다른 공기업의 경우 보면 사업 범위의 근거를 설치법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철도공사가 해외 유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관에 규정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도공사도 이렇게 보정을 했지만, 이런 주요 사업 범위를 모범에, 설치법에 두기 위한 것이지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법에 의하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지요?

○**박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박세환 위원** 아니, 전기통신사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장관님, 이것 전기통신사업을 관광하는 행정부처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위원님 이것은 새롭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의 교환시설과 통신망 시설을 활용해서 공항 지역 내 입주자에게 전화 그리고 전신, 인터넷 및 케이블TV 방송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하고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뭐냐하면 전기통신사업이라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규정을 둔 것 아니냐, 그러면 전기통신사업을 관광하는 행정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 점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상돈 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다른 전기사업자와 배타적으로 이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 것이다, 과거에……

○**박세환 위원** 글쎄,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박상돈 의원** 그럴 필요는 없지요. 상호경쟁 가운데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종전에 정관에 두고 경쟁하던 것을 모범에다 두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세환 위원** 공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공사가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박상돈 의원** 그렇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이게 그렇지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

○**박상돈 의원** 전기사업법을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세환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것을 만들

어 놓은 법률 취지에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입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장관님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전기통신사업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기간통신사업 그리고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2001년 2월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가통신사업도 신고를 다 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유사명칭이나 명칭 사용금지를 할 필요성이 뭐였어요?

○**박상돈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라든가 사철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BTO나 BTL 사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볼 경우에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과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능성도 있고요.

○**박세환 위원** 한국수자원공사법 법조문을 보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준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폐지될 위기에 있잖아요? 위기는 아니고 폐지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상돈 의원** 뭐가 폐지되지요?

○**박세환 위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것 아녜요?

○**박상돈 의원** 그런데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것 이지요.

○**박세환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 법을 보는 사람은 이 법 보다가 또 다른 법 찾아 보고 찾아 보고 자꾸 그래야 되네요?

○**박상돈 의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이를테면 그것은 의제조항입니다. 원래 공기업 직원들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100% 공기업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부 기업이 있잖아요?

○**박세환 위원** 그 조항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17조의2제1항을 한번 봅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과 직원도 있나요?

○**박상돈 의원**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수자원공사 밑에 수기공이라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전담처리하는데 기능 자체는 수자원공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 100% 수자원공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이고요.

그런데 같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기는 뇌물 같은 것을 받아도 공무원 의제처리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중 일부에 한정해서만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상돈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직원, 임원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녜요? 임원, 직원 중에서도 특별히 한정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과 직원만 포함된다 이런 취지로 제안하려는 것 아닙니까, 뇌물죄의 주체를?

○**박상돈 의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현재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모두가 공무원에 의제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기공과 같은 데는 성격은 수자원공사나 똑같은데도 이 조항의 의제처리가 불가능해서 사실상 뇌물죄 같은 것을 저질러도 일반회사 직원과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잘못되었으니 수자원공사와 똑같이 처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적인 취지에서.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위해서 제2소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박세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정관에 있는 것을……

○**박세환 위원** 저는 되도록 경쟁 속에 놔두자 이런 주의입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정관에 있던 것을 법에다 근거를 두어서 좀 더 국회 통제를 받자는 데 그것이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박세환 위원** 아니, 통신사업까지도 공사가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박상돈 의원** 그것을 만일 이 법에다 안 넣으면, 정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통제를……

○**박세환 위원** 정관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군요.

○**박상돈 의원** 이 이상 더 확대하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익이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이것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상돈 의원** 급할 것은 없는데 한꺼번에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박세환 위원**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박상돈 의원** 아니, 박 위원님 한꺼번에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정감사할 때 이런 입법 미비사항이 발견되어서 1년 만에 이것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박세환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박상돈 의원** 아니, 이것 제가 2월에 제안한 것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자, 일단 질의를 계속하면서……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박상돈 의원님 법안은 통과시켜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래도 관례상 위원님들이 소위에 회부하자 이렇게 하면, 대개 한두 분만 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세환 위원님, 꼭 이것 소위에 회부하겠다 하시면 회부할 것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정관에 있는 것이 법률로 가는 것 틀림없지요?

○**박상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행정부처와는 협의된 것입니까?

○**박상돈 의원** 그럼요. 다 협의한 거예요.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법사위에 오기 전에 건교위에서 이 법안을 같이 심의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다른 위원들도 진작 다 지적했습니다.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다가 공항업무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박상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관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법적인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법적인 통제 안에 넣자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체계·자구의 문제도 아니고 위헌 여부 문제도 아니고요.

○**委員長 安商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에 한번 넘긴다 해서 그렇게 오래 끄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 소위에 넘겼다 해 가지고 법안 지금 쌓여 있는 것 있습니까? 오늘 하면 거의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합시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그냥 통과, 소위로 안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30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30건이 더 있어서 토론할 것도 많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의사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문병호 위원** 그것은 소위로 넘기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로 넘겨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60.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 61.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 63.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 64.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원식·김동철·신중식·주승용·이호웅·이시종·우윤근·조경태·강혜숙·윤호중·박상돈 의원 발의)**
- 65.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6분)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59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 법률안, 의사일정 65항 정부가 제출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6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

안),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6년 9월 4일 정부가 제출하고 동년 11월 30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둘째,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계획 수립 시 지방중소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용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6년 11월 14일 이영순 의원, 동년 11월 15일 서갑원 의원, 동년 11월 24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

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경매 시 배당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셋째,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넷째,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5년 10월 11일 주승용 의원, 2006년 10월 4일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5년 12월 26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06년 3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전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였고 셋째,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6년 2월 6일 임인배 의원, 동년 6월 22일 안홍준 의원, 동년 8월 17일 이호웅 의원, 동년 9월 7일 문학진 의원, 동년 10월 2일 이광재 의원, 동년 10월 20일 권경석 의원, 동년 10월 27일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9월 2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년 5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해되, 지방하천은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기계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효율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위하여,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하천환경 및 사회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광역교통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대도시권 안에서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승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 담긴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대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다섯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하여 개발사업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제6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인 이전공공기관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조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 제16조제2항 이외의 지원 및 특례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입법 취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당초 취지 등을 면밀히 살펴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명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나 이 법률안에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의미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의 제명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단서는 임차인의 매입요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자격은 가능한 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 요청을 해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매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 투여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이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려는 취지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수규정과 면허의 취소·정지규정의 요건이 일치하도록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국토 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사항을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제한하는 면은 있으나 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국가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도록 하여 국가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는 국가정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두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면서도 이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이미 이루어진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승계 내용을 하천관리청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동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 관리규정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이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안 제95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하천시설 관리기관의 내부 규정인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하천

법의 체계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들을 유형화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리규정 준수 담보’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은 내부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95조의 벌칙규정 중 관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구성요건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같은 이유로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조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여러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자율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허가가 의제되는 조항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건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제18조에서 4개의 항을 두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 결정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또 이전해 갈, 수도권과 충남·대전을 제외한 지방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있었던 바 있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당초에 시·도지사들은 지역 내에서의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등 유발 또 그에 따르는 부담 때문에, 특히 한 1년 뒤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1년여 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바로 시·도지사들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더 잘 안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해 가지고 2005년 5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주영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그 당시에 계셨던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행자부,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이셨으니까 여기에 서명을 하셨겠네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오영교 행자부장관, 지금 장관께서는 그 당시 행자부장관도 아니셨습니다. 작년 5월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시·도지사들이 전부 서명을 해 가지고 기본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1항부터 10항까지 10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주영 위원 나중에 건교부장관으로 오셔서 보셨겠네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내용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주영 위원 당시에 시·도지사들은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혁신도시라는 것, 또는 광역시에서는 ‘혁신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소위 혁신도시를 두 곳 또는 다섯 곳까지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내세워서 혁신도시는 한 군데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개별이전으로 시·도지사들의 분산 배치 요청을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2005년 7월 27일에 건교부가 시·도지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광역시에 대해서는 분산 배치를 허용하면서 광역도는 분산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시·도지사들과 합의했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이전, 여기에 대한 사유도 기본협약에 없던 산악·해안·섬 등을 예시하면서 아주 좁게 해석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5월 27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당시에 분산 배치에 대해서 광역시와 광역도를 구분함이 없이 똑같이 혁신도시 하나에, 또 개별이전 허용으로 내용을 정했었거든요. 5월 27일자 기본협약에 보면 광역시와 광역도를 구분 안 했습니다.

그랬던 점을 보더라도 이 기본협약의 정신은 개별이전이 실질적인 분산 배치 요청을 수용했던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시·도지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교부가 두 달 뒤인 7월에 발표한 이

지침이라는 것은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하고는 배치되기 때문에 이 개별이전 부분에 관한 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도지사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후 2005년 10월 5일에 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또 이전공공기관들하고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 내용들을 보면 7월의 건교부 지침하고는 달리 5월 27일 시·도지사들하고 중앙정부 관계 기관장들하고 사이에 체결됐던 기본 협약 문안대로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원칙을 다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라는 이 말은 바로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광역도의 그 속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의 필요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당시 시·도지사들은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가 이 분산 배치를 요청하는 시·도지사들에게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린 지침을 지킬 것을 종용한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시·도지사들 중에는 소신껏 개별이전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개별이전 결정한 것을 철회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은 이 지침의 부당 무효를 주장했고, 일부는 또 이 종용에 넘어가서 혁신도시로만 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끝까지 남은 곳은 경남과 충북도,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체계상 문제되는 점을 제가 이제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배경을 잘 아셔야 체계의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종인 위원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법은 공공기관 이전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을 보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

도록 하고 또 토지조사, 37개 행정절차에 관한 인허가 의제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또 토지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 기반시설 지원, 교육 지원 또 이주 지원에 대한 지원,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혁신도시만을 지원하는 내용일 뿐 아까 말씀드린 개별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지원 배려는 하나도 없는 채로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안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시·도지사들과 합의했던 개별이전을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이전을 배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입법안이 서재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건교위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부실하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개별이전의 취지가 반영되기는 했는데 당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16조 기반시설 조성 지원, 여기 한 군데에만 그 규정을 조금 확장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혁신도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그 옆에다가 “이전공공기관” 이렇게 적시해 넣은 정도였습니다.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그 소위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개별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하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다시 팔호 속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문구가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뜻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별씨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교부의 반대로 ‘개별이전’이라는 용어 사용을 못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서 처음부터 쟁점화된 중요 이슈는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 허용 여부였습니다.

기본협의서에서 개별이전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원 대상을 혁신도시와 개별이전 공공기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제명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명을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도시와 개별이전 건설 및 지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제명에 그 취지가 반영되어야 이 제명이 올바른 제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법률 이해와 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해서 의문의 여지를 없애는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 정의를 추가해서 넣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혁신도시 외에 개별이전 사업을 포함시킨다면 똑같이 그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여기에도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 인허가 의제라든지 또 교육 특례를 둬서 지원 한다든지, 이주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회계 등등 다른 모든 지원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을 갖추어야 이 법이 올바른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지 개별이전 혜용 여부는 이 법의 내용으로 예정한 바가 아니다, 그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을 하는 법률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개정안하고 병합심사해야 법체계상의 허접 노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운영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 지금 미상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법안에 바로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똑같은 이 두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별이전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는 텔끝만큼도 개별이전에 대해서 내용을 반영 안 한 채로 넘어왔다,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제

안을 했는데 특별회계 내에 제주도계정의 설치, 제주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특례 또 교통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내용 등등만 있지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개별이전을 이렇게 명시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개별이전을 통해서 분산 배치를 해주겠다고 했던 2005년 5월의 시·도지사들과의 협의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체계·자구의 정비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지금까지 정부 태도로 보면 당초 시·도지사와 맺은 기본협약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개별이전을 끝까지 불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갈등유발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고 하는 시·도지사들을 달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 취지의 개별이전을 허용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현신짝처럼 저버리는 기만이고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지방분권……

장관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행자부장관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지방분권 말로만 외쳤지 중앙 정부에서 하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이게 지방분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런 정신에 위배되고 또한 국토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입법이 되어서 위헌논란의 제기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안 제19조를 보면 대통령령과 건교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성토지 등의 용도, 공급 절차·방법,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 등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유사규정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조성토지 공급절차 조건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법령과의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안 제57조 별칙조항 제1호에 보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향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라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일정한 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위반할 때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작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부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유사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주영 위원님께서 이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각 도시로 분산하는 게 아니고 특정 혁신도시로 집중을 시켜 가지고 성장거점이나 혁신거점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파급시키고 견인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175개 기관이 이전하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개 도시로 나누면 32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들어서고 도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이것을 분산시켜 버리면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2005년 5월 27일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에서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분산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개별이전하는 기관이나 도시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규정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교위에서 제16조를 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 해 가지고 팔호 해서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또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더라도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다 이전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서 175개 기관을 열거만 해 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이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의 입지도 정부는 원칙과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결정했느냐하면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이전기관 의견 다 수렴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균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법안이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하신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것을 왜 건교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무허가개발 행위자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 문제도 저희가 건축법 제78조제1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영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논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委員長 安商守** 잠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또 한번 들어보시고……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이주영 위원님이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수고를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신 김석준 의원님께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건교부에서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이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전체 상임위에서

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여기 법사위로 올린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한 것입니까?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표결처리하지는 않았는데 초기 논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그래서 당초 건교부 초안을 위원들이 최대한 건교부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구한 게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16조제2항을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여야 이견 없이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완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합의의 수준이 100%는 아니고 90 몇%, 굳이 한다면 그런 수준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저기……

**○김동철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처리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방에서는 이게 지방발전의 하나의 촉발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전 법에 의해서는 보상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계획승인이 나야만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되면 혁신도시지구 지정일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각종 절차가 다 있습니다. 지원규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내년 중에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뭐가 불가능해요?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만큼의 혜택만을 해당 지역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어떤 특성별로 묶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혁신기반, 성장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효과를 국가적인 입장에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별이전이 허용됐는데 저는 무슨 이해관계는 조정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남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득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이전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0여 개 시도가 시급하게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정말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개별이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16조제2항을 개정해서 기반시설비만 지원하는 근거만을 들 것이 아니라 제2조제2호의 용어정의에서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지원에 관한 모든 면에 있어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수정안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16조제2항에 들어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용어정의를 제2조제2호로 끌어올려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개별이전의 경우에도 지금 이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의 어떤 우려가 대부분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 법을 소위에 회부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委員長 安商守** 또 잠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렵니까?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선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선병렬 위원** 제가 마산에서 올라오신 마산시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마산시의회 의장님, 다 만나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 드릴까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석준 의원님 말이에요, 이 법을 전교위에서 논의하실 때 충북의 서재관 의원님 또 경남의 이주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별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암수가 있는 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겠지요?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우리도 위원들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비슷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석준** 이런 것들을 죽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구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로 가되 예외적으로 개별이전을 허용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는요, 2005년도 5월 27일 맺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이 아직 유효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유효하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선병렬 위원** 그런데 이주영 위원님께서 사실은 주장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것과 혁신도시로 가지 않는 개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다가 혁신도시와 똑같이 개별로 가는 공공기관을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강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이전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여기에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개별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은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반감시키는 이전이란 말이에요,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개별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혁신도시의 수준에 맞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지역의 사정 또 각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을 이주영 위원님 같은 분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잘 조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 제16조제2항 이외의 지원비 특례 등의 적용과 관련해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을 용어 정의에 단서조항으로 아주 불박음으로 해서 그런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자 이런 것만 우리가 법 해석상의 오해나 혼란만 고쳐 주면 저는 이 법에서 이주영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주영 위원님이 건교부나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여러 가지 행정처리과정에서 있었던 불신의 소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에다가 개별공공기관 이전을 딱 못박아서 개별공공기관 이전을 마치 양성화하는 듯이 이 법이 가버리면 누구든지 혁신도시를 하나 개별공공기관 이전을 하나 다 지원을 다 받게 되면 나중에 충북,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갖은 혼란이 생기고 또 지역 소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럴 가능성성이 있어서 혁신도시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개별공공기관 이전도 정말 특수성을 사정해서 조용히 표 안 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놓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건교위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논의해서 수정된 법이다, 그러면 왜 정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은 감정상으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한참 지난 얘기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야 개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영 위원** 저는 도와주는 발언을 할 줄 알았더니……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까?

웬만하면 발언 적당하게 하고 그만하시지요.

**○문병호 위원** 다른 범인데요, 이 법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의 지적도 여러 가지 일면의 타당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만 됩니다. 더 논란한다는 게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종결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왜 지금 소위에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거를 저는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적인 문제이고 다른 것보다 첫 번째로 이게 지방분권을 선호하고 있는 헌법의 원칙을 침해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제19조가 건설교통부 규칙 그러니까 건교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되었다, 그 다음에 제57조(처벌) 법규가 타 법령과 안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19조와 제59조, 제57조의 문제는…… 장관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19조 문제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건교위에서 법안심사하면서 고쳤습니다. 제57조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이 혁신도시법이 지방분권을 침해하느냐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역량이나 권한을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전되는 기관의 특수성,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이전도 가능하게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근거가 없이 사실 처음에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건교위 논의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논의되다가 최소한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근거 또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원근거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되어 가지고서 제16조제2항이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뒤에 제16조제2항 같은 경우도 “이전공공기관” 팔호 해 놓고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이 규정 자체에 이미 개별이전의 근거는 들어가 있고 개별이전 지원근거는 마찬가지로 그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정부의 정책판단과 선택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더 이상 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법령 제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혁신도시 플러스 개별이전 공공기관 지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원칙이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개별이전의 근거와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문제는 이게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를 똑같은 반열에 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건설 문제는 다시 원점……

저는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委員長 安商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것 뺀 한 얘기를 아닙니까?

○정성호 위원 이게 국민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선병렬 위원 내버려둬요. 아주영 위원이 한참 말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니……

○委員長 安商守 아니, 그런 사정은 좀 이해해 줘야지요. 같은 동료 위원인데요.

○정성호 위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아주영 위원님의 고민은 저희들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명확하게 한다면 김동철 위원 안 정도로 하면 충분히…… 이미 건교위 속기록에도 다 장관이나 차관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정책집행하겠다고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좀 더 받고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자,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 계속 토론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영 위원님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는 동안에 다른 법안들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것 하다가는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법안들 질의하십시오.

건교부 측은 아주영 위원하고 좀 의논해 보세

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웬만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래 가지고 오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이것의 제목에 “부도”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부도”란 말이 법률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게 부도란 말씀입니다. 이게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법에서 “부도”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이 아마 최근에 개정된 모양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부도 등”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용해 가지고 “부도”……

“부도”라는 말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도산된’으로 한다든가 그런 용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용어이고 우리 법률용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도”라는 표현을 제명에서 삭제 내지는 바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박세환 위원 ‘도산’이 맞지.

○문병호 위원 ‘도산된’ 한다든가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보니까 지금 교통시설부담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문병호 위원 종전에 없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가되었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추가된 이유가 뭐니까? 그전에 없었던 게 왜 들어갔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과세대상입니다. 부과대상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도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상복합시설인데 건축법에 의한 것은 과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과세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종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한 것이 혹시 형평성이라든가 위헌소지가 있을 가능성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만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그다음에 하천법에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하천으로 되면 국유로 되어서……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하천이 국유하천하고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이 있는데 국유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사유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유화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문병호 위원 지금 보상해 주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런데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국유하고 지방1급하천도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은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과거에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국가하천으로 들어오면 사전보상이나 등기 절차 없이 바로 이것을 국유화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이제 하천이나 이런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보상도 절차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으로 되면 국유화됨과 동시에 보상을 해 주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문병호 위원 보상해 주는데 지금 현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그리고 보상도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그러면 보상을 결국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은 지방하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2급하천인데 이 경우에는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사유로 인

정도 하고 또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가지고 자기가 국유화하고 싶으면 보상받고 국유화할 수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 안 해 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일단 이번 법에서 그동안 지방하천의 비율을 줄이고 국가하천의 비율을 훨씬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하천 보상해 주는 것을 갖다가 보상 안 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까?

정성호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예.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방하천이 그냥 자연 상태로 지방하천으로 있는 경우에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둑을 쌓는다든지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방하천도 매수를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매수를 안 하느냐, 그것은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놓았답니다.

○문병호 위원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지방 국공유화하면서 보상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하여튼 저는 이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은 소위에 가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음주상태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처벌까지 받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박세환 위원 처벌까지 받고 있고 또 거기 제42조, 도로교통법을 보면 그때는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제41조에 단서를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도록 한

다, 제42조도 같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운전할 때만 이렇게 위험성이 강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법률적인 것이라서, 담당자 답변대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현장에서도 음주운전했을 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세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는 삭제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도 처벌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지금 현재 개정안 내용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모두 다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해당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법체계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과 다 고려해서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위원님, 건설기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지금 현재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현장에서만 작업하는 불도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처벌하도록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정상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도로상에서 할 때는 금지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는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다 처벌하는 것으로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조종을 하면 처벌받지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벌금 같은 것을 내고 징역형도 지금 하고 그러지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런데 현장에서 할 때는 그냥 조종면허만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벌규정은 왜 안 두셨어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처벌규정이 면허취소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벌금도 해야 되고 도로에서 조종할 때와 위험성이 그것보다도 더 클 때도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것 현장에서 음주해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때도 벌금에 처하든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입장이면 형사적인 처벌도 좀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건설지원팀장 정삼정  
지금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서 도로교통……

○박세환 위원 아니, 그래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형사적인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징역형을 보낸다든지 벌금을 선고한다든지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수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말이에요, 준수사항이라는 게 그래도 한 네다섯 가지나 세네 가지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문에 법조문을 축약한 것 팔호 열고 표시한 것 있

지요? 거기에 음주조종 금지를 ‘준수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취 중에 운전금지·조종금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수사항이라는 게 너무 조금인 것 아닙니까? 준수사항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 소위에 넘겨서 체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법 제95조(별칙) 조항을 보면 제1호·2호에서 관리규정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관리규정은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만드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만들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고, 이 지적사항을 건교부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저희는 이게 그동안 한 30여 년간 해 왔던 규정이라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법리상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면 그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것은 삭제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1호에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어느 법에 관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성호 위원** 하천법……

○**委員長 安商守** 예, 질의하십시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호 위원께서 지방하천의 경우 매수청구권 규정이 없는 것을 지적했는데 원래 지금까지 하천법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이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가지고 국가하천은 매수청구권을 두고 지

방하천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두고 지방하천의 경우라도, 매수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방하천의 점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5년까지 그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게 되면 대개 그것 때문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논리로 가면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37조제1항에 보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 등이 의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이 위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전국에 복합화물터미널이 몇 개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5개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반대하고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교부장관이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인데, 지금 건교부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정도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나는 이런 법은 처음 봤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아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이것 마음대로 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의제사항도 전부 마음대로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또 건

축법에 따른 의제사항,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건축협의……

이것 건교부장관이 다 해 버리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뭐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委員長 安商守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우리 의왕시에 터미널이 지금 35만 평 있잖아요, 경인ICD 해 가지고. 1년에 수십억 원을 도로파손비 그다음에 소음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를 입히면서 국가에서 보상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겨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1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이것 해 주고…… 지금 도로파손비 제대로 냈습니까?

35만 평이나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또 추가로 더 확장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도 국가에서 좀 해 줘 가면서 하라고 했더니 그것 안 해 주려고 지금 이런 의제조항 넣어 가지고 말이지, 건교부장관이 마음대로 그냥 확장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말살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 말하자면 권리제한은 좀 적정해야 되는데 과잉으로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이게 뭐니까?

여차피 이것은 소위로 넘긴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내가 반대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해 가지고 슬쩍 넘겨 가지고 모르면 넘어가 버리려고 그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토론은 우선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다른 법안 심의할 동안에 계속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60항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것은 지금 통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병호 위원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개정안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의사일정 제60항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이 부분도 별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0항, 62항, 65항, 이 세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3항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는 아까 논의……

○崔炳國 委員 처벌규정……

○委員長 安商守 소위로 넘길까요?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지방발전에 관한 매수청구권 문제 때문에……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소위에 넘기시지요.

의사일정 제63항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오늘 엄청나게 법률안 넘기니까 소위에도 좀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4항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개의 안건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제6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9항은 계속 논의하고 6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장님, 65항도 의결 안 해 주셨는데요?

○委員長 安商守 다 했습니다. 그것은 통과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지금 제59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계속 논의를 하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논의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성질의 법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순수하게 체계상의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원칙대로, 다른 법안들이 체계 자구상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소위에 회부하는 우리 관례대로 그렇게 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사 간에 무슨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그려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사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시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남을 포함해서 경남, 충북에서…… 아무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의 시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지금 타 시도는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개별이전을 말씀하시지만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전남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 자체를 또다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개를 또 합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시도만의 문제라면 이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선 시행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것을……

○이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주영 위원 광주, 전남을 이끄는 사례들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委員長 安商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쪽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자꾸 주고받고 하면 오늘 끝이 없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속시켜 놓고 계속 협의를 시키겠습니다.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8.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정청래·김재윤·김명자·강길부·김재홍·이광철·전병현·강혜숙·한광원·박찬석·우상호·장경수·최철국·김희선·강성종·박기춘·김교홍·박찬숙·윤원호·지병문·오제세·김혁규·정동채·정성호·최성·최용규·이광재 의원 발의)

(18시02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6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합시다. 이러다가는 밤 새우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委員長 安商守 5분쯤 쉬었다가 할까요?

○이상경 위원 계속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10분간……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까요? 나도 지금 우지끈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6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66항부터 6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쪽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5조의2제3항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열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같은 시기에 동일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따로 열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 신분을 겸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각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재판관 임명에 앞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화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 내지 기능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판관 임명에 있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문상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2항에서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적격성 심사 외에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 심사까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겸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열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 열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개정안과 다른 것은 개정안은 ‘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를 겸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1안 수정안은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제3항 부분이 제2항의 예외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법문상 드러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재판소장 후보자가 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 등 재판관의 신분을 취득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되 인사청문회의 형식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외에도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주무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 안 제6조제2항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 9쪽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대상을 명료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정부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9조제1항 부분입니다.

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의 합리적 인

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유인물 14쪽,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열람·복사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제3항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그 복제물을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시하지 않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37쪽 경영목표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 26쪽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감사 등의 임기 부분입니다.

안 제28조제1항 부분입니다.

공기업 등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기업 등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임기가 적용되던 임원에 대하여 이 법률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기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제1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면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안 제28조제1항 입법 취지에도 불

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정부투자기관 임원 중에 이사나 감사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8조제1항과 안 부칙 제2조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공항을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 또한 소위원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회부될 예정으로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법률안을 심사하시면서 지금 배가 고프실 테니까 위원장실에 떡이 있으니까 가서 떡 드시면서 계속 좀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국회법?

○이상민 위원 아니요, 짧막하게.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금 전문위원회가 지적을 했듯이 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에 지금 부담금의 헌법적 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그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이상민 위원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1안이 아주 명확하게 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 1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商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법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장 견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까 안 그러면 국회사무……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민동기 입법차장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우리 입법차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까……

헌법 규정에는 말이지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 가지고, 동시에 청문회하는 것이 이게 헌법 취지상 됩니까? 나는 그게 의문이 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민동기 헌법 제111조제4항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 집행상 실제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저희가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그것을 지금 이 개정안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개정안 고쳐놓은 것 보니까 이렇게 해 놨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열지 아니하고' 우리 전문위원 수정해 놓은 것 보니까, 그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겸하는 것으로 본다' 나는 이런 법률용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그 헌법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전문위원 한번……

○전문위원 박기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때 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주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는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제65조의2제2항에 보면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 신분을 겸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외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委員長 安商守 여기에 제대로, 또 헌법적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만 더 문제를 제기하고요, 위원님들이 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운영 법안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과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해서 이 법률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서 몇 가지 기관은 독립성을 위해서 제외를 했거든요. 공공투자기관관리법 뭐 이런데서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이 K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버려 놨는데 단서조항에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다 잡고 있고 각종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또 KBS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운영 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을 할 때에 주로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100%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독립적……

○委員長 安商守 그레 그 원칙은 아는데 아마 이것을, 그 원칙은 아는데 그렇다고 국가에서 투자했다 해서,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 주자는 우리 헌법정신은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래서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그래서 한국은행과 KBS 같은 그런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단서를 달아 가지고 그것은 예외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다만 이게 방법론상으로 법에서 바로 적용 제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 제외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법체계상 여기에서 자동 제외하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을 할 때 그것을 제외하도록……

○委員長 安商守 그렇게 하면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시행령에 넣는다 이렇게 돼도 시행령은 정부 각료들 몇몇이 합의하면 그뿐이고 국회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국회의 견제를 안 받게 되거든. 그래서 시행령에 넣는 것도 제대로 독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委員長 安商守 논의를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마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하는 모양이던데 시행령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KBS가 말을 안 듣는다, 한국은행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령 바꿔 버리면 끝인데요? 언제든지 통제가 되지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예, 정성호 위원님.

참, 아까 최병국 위원님 하셨죠? 그러면 최병

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성호 위원님……

○崔炳國 委員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이 문제는, 엄격한 헌법의 문리 해석대로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한번 하고 또 특별위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통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예.

○崔炳國 委員 그래 할 것 같으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이 된 경우든지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로써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겸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인데요, 그런 식으로 문장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러면, 헌법에서는 분명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후보자 중에서 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했는데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용어 정리를 조금, 문맥을 좀 다듬어야 될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절차는 하등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동시에 지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崔炳國 委員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崔炳國 委員 한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한 시간 아니라 몇 초만 차이 나더라도 옛날에는 청문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었고 이랬는데 요새는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재판관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문회 그것을 좀 생략하고 뒤엣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같이 포괄하자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취지는 다 찬성을 해요. 알 수 있겠는데,

재판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재판관 중에서 후보자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경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하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시 지명의 경우가 문제 되니까 무용의 절차를 반복해서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으로 통일시키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崔炳國 委員** 예.

○**이상민 위원** 자구를 그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위를 겸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이면서……

○**崔炳國 委員** 그런 경우에 그러니……

○**委員長 安商守** 이상민 위원님은 자구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자구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상민 위원** 저는 전단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유’…… 겸유보다는 경유라고 해야 되는데. ‘경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적절치 않은 문구 같고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으로……

○**전문위원 박기준** 그것이 개정안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이 개정안이에요?

○**전문위원 박기준** ‘열지 아니한다’……

○**委員長 安商守**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지난번 같이 또 안 되기 위해서는 문구를 좀……

그다음에 이상경 위원님.

○**이상경 위원** 국회법 개정안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 저는 옛날로 가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행 이 제도, 이 규정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선후 개념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먼저 임명을 하고 후에 임명한

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분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신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는 3개가 있습니다. 공기업도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고 그렇지요. 그중에서 KBS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이냐, 기타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정부의 감독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공시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 이 정도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론의 자유나 은행의 독립성 이런 데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적용을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민들에게 경영 내용을 공시하는 사항이라거나 고객 만족도라거나 이런 사항만 적용이 되고 지배구조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관여를 않도록 현재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경영평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러면 거의 영향은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이상경 위원** 굳이 넣을 필요도 크지 않고 뺄 필요도 크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러니까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에서 그것을 고려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예,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다른 사소한 자구수정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법률안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을 때 지정 당시 법령이 결국 효력이 상실되니까,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냥 ‘임명 당시 법령’으로 자구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상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라는 게 경영공시하고 서비스 만족도 공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하고 같이 함께 다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하기를 그 당시에도 물론 KBS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은 확고히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다만 이것을 법안에다 이렇게 냈을 때 사실 이것 외에 개별 다른 기관에서도 여기에서 빼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안에 두지는 않되 KBS와 한국은행은 그런 특성을 고려해 갖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지정고시를 하게 될 때 제어한다고 했던 거죠?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봄으로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운영위원

회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속기록에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갖고서 다르게 남용을 한다든가 또는 KBS나 한국은행을 통제한다든가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요, KBS 의무 해서 제11조부터 제15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1조에는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기타 기획예산처의 요구사항을 다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12조에는 기획예산처가 각 기관의 공시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려고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14조·제15조는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권을 가지고 혁신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을 진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의 완전히 장악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장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정성호 위원 이런 내용들은 이 법이 아니라도 공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법이 아니더라도 공시해야 될 사항이지요.

○委員長 安商守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보면 독립성이 거의 지켜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위원 이 사항들을 공시하는 것 자체로 어떻게 독립성이 훼손됩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委員長 安商守 공시가 아니고 자료 요구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

○趙舜衡 委員 저 좀 한 말씀……

○委員長 安商守 예, 말씀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끝나셨어요?

○정성호 위원 예.

○趙舜衡 委員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을 보니까 1, 2, 3, 4, 5, 6 해서 공공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다만 그 기관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공성이 있다, 민간기업이 아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다

양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형태는 다양합니다.

○趙舜衡 委員 다양하죠?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趙舜衡 委員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 말하는 ‘공공성’ 이것 하나뿐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입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규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해야지 아무리 생각만 좋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무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위원장께서도 이미 제기하셨지만 여기 제2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된, 예시가 된 한국은행이라든가 KBS의 경우, 한국은행의 법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趙舜衡 委員 KBS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이 있고?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趙舜衡 委員 한국은행법, 한국방송공사법 그게 기본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규정을 다 배제하고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것이 법체계상 맞습니까? 이것은 이럴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趙舜衡 委員 해 보세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금 여기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한국방송공사법이나 한국은행법과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타 법에 적용이 돼 있는 이런 경우이자 이 법과 한국은행법이나 이것이 저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원의 임명과 관련돼서 다르게 규정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정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과 KBS

를 지정고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KBS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다면 이 법에서 그것을 명시해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제2항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명시해도 좋고,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지정 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체계상, 예를 들어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KBS를, 100%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기관의 중립성만 가지고 제외하는데는 좀 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한두 의견만 지금 예시적으로 거론됐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런 입법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고시로 이렇게 한다는 것, 우선 ‘100분의 50을 출자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그 많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그런 기관들을 전부 다 하나로 딱 기준을 정해서 ‘정부가 100분의 50을 출자한 기관’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입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50% 이상의 지분을……

○趙舜衡 委員 이것은 과잉입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법이나 한국은행법을 보면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국은행법이나……

○趙舜衡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저촉되는…… 아까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른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말이지요. 다른 법률이라는 게 바로 한국은행법이나 한국방송공사법 아닙니까? 이 법 이외의 법이니까. 그렇지 않습

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런데 그런 법률에는 이런 경영공시라거나……

○**趙舜衡 委員** 거기하고 저촉이 되는 것을 예전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아니요. 한국은행법이나, 무슨 경영공시나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전혀 저촉 안 된다는 말씀이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기본법은 당연히 그 법이 다 적용이 되지요.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러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으로만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기관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고객만족도라거나 경영공시라거나……

○**趙舜衡 委員** 아니, 이 설립 근거를 법으로 한 기관이 꽤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주택공사법도 있나……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趙舜衡 委員** 하여간 연뜻 생각나는 게……

그러면 여기 적용대상이 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안 되고 소위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법 체계상 문제인데.

○**委員長 安商守**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소위에 넘길 것은 소위로 빨리빨리 넘기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소위로 넘기기로 돼 있는 거 되니까.

그러면 제6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항을 조금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 통과시켜 드리는 게 청문회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데. 책 안 잡히게 좀 정리를 해 보시고.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계속 계류시켜 놓고, 또 다른 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 놓고, 의사일정 제6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0.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 · 김태년 · 김재윤 · 이광철 · 정장선 · 김동철 · 이목희 · 박기준 · 최규식 · 양형일 · 정청래 · 김원웅 · 신중식 · 최성 · 강기정 · 최규성 · 김춘진 · 조배숙 의원 발의)

## 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7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희 · 권선택 · 김교홍 · 김낙성 · 김덕규 · 김덕룡 · 김명자 · 김무성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성조 · 김영선 · 김영주 · 김우남 · 김재윤 · 김재홍 · 김정훈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형주 · 김홍일 · 김효석 · 김희선 · 나경원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류근찬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준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석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송영길 · 신국환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선호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열 · 이시종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정일 · 이종걸 · 이혜훈 · 이화영 · 임종인 · 임채정 · 임태희 · 장경수 · 장복심 · 장

영달·전병현·전여옥·정갑윤·정성호·  
정청래·조배숙·지병문·진수희·채수찬  
·최성·최규성·최규식·최연희·최인기  
·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  
영 의원 발의)

**74.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고홍길·노웅래·강성종·  
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  
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  
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  
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  
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  
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  
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  
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  
홍재형 의원 발의)**

**75.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강성종·김덕규·김원웅·  
김재윤·김태홍·김한길·김희선·노웅래·  
민병두·배기선·신기남·오영식·  
우상호·우윤근·윤원호·이광철·이미경·  
이시종·이인기·정청래 의원 발의)**

**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10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7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고홍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76항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민 간사님하고 국회법 그 조항……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安商守 그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문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전부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이 중에서 의사일정 제7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지도자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응시자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정보수집,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검토보고 안 하셨네요.

다음,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현행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법정 법인이어서 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더라도 이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이와 유사한 다른 입법례와 균형을 맞추어서 ‘허가’를 ‘인가’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 있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안 부칙 제1조에 따라 기금과 관련된 조항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 부칙 제5조제2항이 공포 후 60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위에서 기금운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수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이 법 시행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부칙 제5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가 아닌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가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입니다.

부과금 징수 문제에 관하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영화진흥금과 대신에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면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금을 그 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부과금은 그 성격이 특별부담금으로

써 영화상영관의 입장권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연장 등의 관람료에 부과·징수했던 문예진흥기금의 부과금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연장 등의 관람료에 부과하였던 문예진흥기금의 부과금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개정안의 부과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건대 극장에서의 영화관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만한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보기는 힘들고 누구나 극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비디오, DVD 형태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극장관람객이 다른 영화감상객보다 영화진흥 목적과 객관적으로 더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권에 영화진흥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영화상영관 이용자로 특정되므로 충분히 집단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영화진흥이라고 하는 목적과 부과대상인 영화관람자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영화관람을 통해 문화생활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영화관람자에게 영화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보다 크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는 벗어났다고 딱히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2조제1항제3호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문화재 취급 기간의 장단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변경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허가 의제조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7호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승인을 의제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자체를 의제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의제하는 규정임에도 설치를 의제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항 제9조, 제20호, 제21호 등에서 인허가 의제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불복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나 불복절차, 체납처분의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명에서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안의 제명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법률을 한글화하려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제명에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금지원 규정에 관하여입니다.

안 제12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0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직접 개정하여 국민체육

진흥기금을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위원회로 하여금 차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이 법률안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두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부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은 종전에 설립된 한 국도평방지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허가’를 ‘인가’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결국 기금조성을 위해서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주성영 위원 지난 2003년 12월에 구문화예술진흥법의 모금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문광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문예진흥기금의 위헌 판례는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기준, 방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모금액의 상한과 모금방법, 절차의 대강을 정하고 있고 모금도 영화 관련된 자로 하고 그 사용용도도 영화발전에 사용하도록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성영 위원 그것을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주성영 위원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법무부나 법제처에 의뢰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무부나 법제처의 의견은 들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주성영 위원 사적으로는 검토를 의뢰했었습니까?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법제처하고는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 법안이, 지난번 장관께서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들었어요. 준조세 형태로 5%를 입장료에서 걷는 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극장업계와 영화제작자들과 지금까지 약 6회에 걸쳐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을 걷는 문제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몇 %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성영 위원 지금도 부과금 걷는 문제에 대해서 영화계나 극장업계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과 만나서 이 기본취지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2000억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영화인들이 2000억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마련된 돈이 그야말로 극장계나 영화업계 이런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는 서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핵심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주성영 위원 여기는 보면 제1조 목적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태권도 관련 법안은 제10조에 보면 공원사업의 시행자에서 태권도진흥재단, 그다음에 지역 관할 지자체, 그리고 민간사업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혜조항을 일별해서 뽑아 보면 제12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는 그 위에 민간사업자까지 포함되는 사업시행자가 문광부장관이나 전북지사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등 무려 22개 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 또 제14조에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고 또 제16조에는 성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태권도공원을 조성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단체하고 시설에다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데 원래 의원입법안에 보면 이러한 지원근거 규정을 두면서 한편으로 감독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회계감독 권한과 또 문광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종안에는 이것이 다 빠졌어요.

그렇다면 위에 특혜규정의 형평성 내지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 태권도단체나 시설의 방만한 경영과 회계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을 좀더 원활하게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권한을

삭제한 것은 보다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감독은 체육단체 지도·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독을 피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어떤 발전의 계기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여기 태권도공원 또 각종…… 경주 또 백제권 이래 가지고 전국에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이러한 현상도 우리 국가 전체적인 재정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시스템에서 한번 이제 점검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를 해서 한번, 제가 지적한 문제를 포함해서 따져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어차피 소위에 넘길 테니까.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웬만하면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병호 위원 간사가 바뀌니까 막……

○委員長 安商守 그러니까, 간사가 바뀌니까 그냥 통과율이 꽉꽉……

7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等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8.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  
치위원장 제출)

79.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무성·임인배·김석  
준·권경석·박세환·이인영·박찬숙·이해  
봉·이성권·고경화·안명옥 의원 발의)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33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7항 및 7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참 많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재오 의원, 권경석 의원, 이호웅 의원,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개정안은 전반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와 충분한 정부 측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현행 1969년 8월 7일 이후에서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직권재심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도 추가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기이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득조회 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활동상의 한계와 진상규명의 과제를 반영하여 올바른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박찬숙 의원, 강창일 의원,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에 집단학

살지 ·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 정정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제81항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 세 수정 신고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 편의 및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당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셋째, 소득할주민세 수정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부과 고지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넷째,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익 있는 단체는 감면을 축소하고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폐지하는 등 금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감면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지방세법이 금년 말에 공포 시행되려면 오늘 법사위의 의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될 경우에 감면 적용 시한의 만료로 국가 정책사업과 농어민 지원 부분이 모두 과세로 전환되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선처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불명확한 복직권고 이행 여부 확인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3항의 의미가 중복 규정되는 등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의 연장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은 신청기한을 2007년 6월 30일로 할 경우 시행령 개정, 시도 접수창구 개설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과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을 여유 있게 둘 필요가 있는 점을 이유로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현행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각각 맡도록 하여 이들 사항에 대한 결정 주체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하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분되지 않고 있고, 재심의를 신청하는 대상도 위원회인지 실무위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제주4·3사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자 심사 결정은 법령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집행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고 현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지급”을 “집행”으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국기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위치를 이동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명 등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위원,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취지는 이들 각호에 규정된 자 모두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이들 각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무단파기 · 반출 등의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 손상 · 은닉 또는 멸실하거나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단파기 · 반출 등의 금지사항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보호기간이 정하여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대통령이 법령에 의한 군사 · 외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 여섯 가지 기록물에 대하여는 열람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호기간을 1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30년의 범위를 보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보호기간 중에도 열람 ·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첫째 영장이 제시된 경우, 둘째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셋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보호규정을 둔 취지는 중요한 일정 부분의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부동산 환매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농지 시장 안정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 등록세 면제 등을 규정하면서 한국농촌공사의 매입농지 등을 환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 · 등록세를 면제받는 주체로는 소유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는 환매할 수 있는 자를 매도 당시의 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괄승계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의 제 · 개정을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 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주

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현재 아직 재경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내일이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내일까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한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 또한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법률안이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통치자는 역사의 평가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록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금 청와대에 기록관리비서관이 있는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어느 범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이 법에는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규정돼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관련된 모든 기록물로 지금 총칭이 돼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 외에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향후 입법과제로 남겨놓은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희는 지금 일단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생산과정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다음에 영장제시에 의해서 사본제작이나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장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제한은 할 필요가 없나요? 영장제시가 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법원의 영장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 속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헌법상 대통령은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기록물 관리……

**○박세환 위원** 글쎄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하여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한 기록물이 남을 수 있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대통령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문화 정착에 사실 뜻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니까 국회에서 의결이 있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기록 청장이 판단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을 하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상이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세환 위원** 지금 일반원칙에 의하면 영장제시를 하면 사본 정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원칙을 확인한 의미인 것이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

리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야지 실질적인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순형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대통령기록물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자 그런 입법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국가적인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기록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또 독립된 법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희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는 지금 이 관행화된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나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에 필요한 입법취지나 내용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2조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공공기록……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리고 6장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몇 개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복입법 아닙니까? 말하자면 법을 2개 만드는 것이지요, 똑같은. 대상은 하나인데 법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중복입법 내지는 과잉입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고 아래 가지고는 법체계상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도 한두 가지 보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5조에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4호에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기록관도 양 법률에서 다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양쪽에 똑같이 있고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하고, 어느 게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趙舜衡 委員 일리가 아니지, 옳은 얘기이지. 뭐 일리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아니, 위원님, 신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대통령에 관련된 조항은 다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 버리고요. 새로 만드는……

○趙舜衡 委員 없애 버려요? 그것 개정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개정 취지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趙舜衡 委員 어디요? 아니 이 법을 개정해야지, 여기서 삭제해야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법 속에……

○趙舜衡 委員 아니 공공기록물에, 대통령기록물도 공공기록물의 일부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한 기본법은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이거든요. 그러면 정 대통령기록물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쪽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이번에 새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게 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률 속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련한 조항은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삭제 먼저 하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한다 마다 그러시지 말고. 아니,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나중에, 이것 먼저 하고 이것은 또 나중에 한다…… 아니, 정부에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그 부칙조항으로서……

○趙舜衡 委員 아니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시켜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법 아닙니까? 이 기본법에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대통령기록관도 살아 있고 심의위원회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

것을 보완하든지 정 안 되면 그것 삭제하고 개정안을 같이 내든가 그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은 왜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합니까? 이렇게 중복입법이 되는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잘 했던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많이 제정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가지고 사문화된 법도 많고 그러는데 자꾸 법을 만들어 내요. 법이 2000개인가 3000개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뻔히 있는 법, 시행하고 있으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말이지요. 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기……

○趙舜衡 委員 아니, 그리고서 내가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일리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위원님,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하고 특수성을……

○趙舜衡 委員 글쎄 아무리…… 중요성은 내가 전체를 했어요.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것은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법이 살아 있는데 그 법 말고 똑같은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입법부에서 용인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쪽 개정안이 같이 나오든가 그래야지. 그러면 이 공공기록물을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거기서 대통령기록관 설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기록관이 양쪽으로 2개 생깁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것 뭐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국법체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국무위원 취임하실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고 선서 안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안입니까? 이 내용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기록물을 멀실되지 않게 하고 제대로 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법체계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런데 전 법에 그런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백이 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법과의 조정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더 이상……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님 하시고.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순형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이 지금 예산부수법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이 법은 예산부수법은 아닙니다.

○주성영 위원 예산부수법률안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 안 되는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산부수법안은 아닙니다.

○주성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든 원래 있던 법률에 의해서 보존하든 간에 대통령 부인에 관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는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거기까지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된 그런 기록물들을 갖다가……

○주성영 위원 실제로 과거의 국사 행위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후에…… 현재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주성영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공적인 기록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알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대통령 부인 말하니까 왜 웃어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 웃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이 법안 제5조나 20조에 보면 비밀기록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밀기록물의 정의가 뭐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비밀기록물은 외교 안

보 국방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요.

○**주성영 위원** 비밀기록물에 대해서 개념규정이 없어요. 조순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도 이 비밀기록물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습니다. 비밀기록물이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17조에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규정 4항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영장이 있거나 그다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재적 3분의 2라면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제명이나 헌법개정 요건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데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주성영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어차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 정도 하시지요. 어차피 소위로 넘기기로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토론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다른 법안 하나……

○**委員長 安商守** 다른 법안이요?

○**문병호 위원** 예, 보완할 게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어느 법안입니까?

○**문병호 위원** 민주화운동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10조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서 개정안이 2007년 6월 30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올 9월에 행자위 소위를 통과해서 그때 시점으로는 2007년 6월 30일이 맞았는데 이렇게 해서 늦어졌

기 때문에 조금 급박한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입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법이 늦게 통과하는 바람에 신청 시기를 조금 늦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수정안으로 하나 제가 제출을 한번……

○**委員長 安商守** 아니면 그대로 해서 여기서 우리끼리 결의하면 됩니다.

○**문병호 위원** 예, 우리끼리 결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없지요?

○**문병호 위원** 없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대강 뭐 의결정족수는 됩니까?

○**이주영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강창일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 내신 안 중에 전과를 말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그 법안을 여러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호웅 의원님 제출했던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 내에서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온 원안에는 그게 빠져 있네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예.

○**이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 정도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제는 질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1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오늘 밤냅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세요. 미리미리 질의 신청을 하셔야지.

○**나경원 위원** 처음 좀 발언해 보려고 했는데……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79항까지만 하겠습니다.

77, 78, 79항,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호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수정안, 민주화운동……

○委員長 安商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문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그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商守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웃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어떤 거요?

○委員長 安商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것은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기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하고 같이 좀 해 달라고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88건을 하니까 제가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89건이 돼 버렸네요.

원장 제출)(계속)

(20시10분)

○委員長 安商守 6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책상 위에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듬었지만 여하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 위원장 제출)(계속)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또 의결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것 아직 의결을 못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시켜서 하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꼭 이의 있으셔 가지고 안 되겠다면 전체회의에 계속 그대로 계류를 시키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표결을 하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표결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도 가끔 하시잖아요.

○委員長 安商守 가끔 그것은 여야가 합의됐을 때만.

○정성호 위원 내일 전체회의라도 올려줘야지.

## 83.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

의)(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윤석·정성호·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

(18시13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3쪽입니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법학원에 대하여 각종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가들의 모임으로 보호육성하고 국내 법무역량의 집결과 대외 교류, 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성격과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소속기관 등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마지막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한국법학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학원의 명칭은 현재 다수의 사설학원 등에서 기 사용 중인 상태로 명칭사용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재원·안상수·엄호성·

박찬숙·심재철·이해봉·이재창·김정훈·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 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문현·이해봉·이인기·

권오을·엄호성·임태희·김태환·임인배·곽성문·김석준·강재섭·윤건영·권영세·정두언·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 8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시16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84항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정부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문병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문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 및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통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른바 전관예우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등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변호사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변호사 등록을 실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 광고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사건브로커 고용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며 그 외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행위를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 또는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변호사의 법조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법조윤리가 포함된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로 하여금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징계사유 또는 위법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변호사의 징계 중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하고 의뢰인 등의 징계청원권 및 재청원권을 신설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던 부분을 직접 규정하는 등 징계절차를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다만 판결에 양형기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양형이유 기재를 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재판절차인 서면신속절차 또는 즉시심판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도록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수정하였으며 양형기준제도 운영에 관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양형위원회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이상민 위원 저는 양형기준에 관한 법원조직법 그리고 변호사징계제도는 사법개혁의 아주 큰 계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전관예우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무줄 판결 등등으로 해서 사법불신이 아주 극심해졌는데 이와 같은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사법불신에 큰 해소가, 또 극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관들께서 양형기준을 법관의 재판권을 제한한다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해서 법원에서는 이 양형기준이 갖고 있는 법정신을 투철하게 관찰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저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원조직법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양형기준 또 양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하고 또 상고제도의 개혁이라고 할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의 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아무 실효성도 없는 예비판사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실정에 맞는 법관제도로 돌아가자 하는 취지의 예비판사제도를 폐지하는 안,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단독재판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지금 함께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건 한 건들을 우리 소위에서 대등하게 같이 다루고 또한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이것 짤끔 저것 짤끔 뭐 합의가 잘 안 된다고, 이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매듭도 안 짓고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만 짤끔하는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는 다시 보류를 하고 변호사법만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4항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대안 채택으로 인해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 무렵이 되니까 목소리에 힘이 생기네요.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정부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주영 위원님, 제1소위원장이 해 가지고 온 건데 제2소위원장이 반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주영 위원** 소위에서도 의견이 팽팽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예, 됐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영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委員長 安商守**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김동철 위원**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주영 위원** 매듭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선병렬 위원** 다른 법안들도 빨리 합시다.

○**委員長 安商守** 다른 법안들도 빨리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이주영 위원** 아니,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소위에서도……

○**委員長 安商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9.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동의에 관한 건

(20시27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89항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3억 7500만 원을 삽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동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동의 요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온종일 법안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건교부장관, 또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건교부장관님은 가셔도 되는데 왜 계셨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장님, 그것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商守 전체회의에 계속시켰어요.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15인)

김동철	나경원	노회찬	문병호
박세환	선명렬	안상수	이상경
이상민	이주영	임종인	정성호
조순형	주성영	최병국	

### ○위원 아닌 출석 의원(8인)

강창일	강기정	권영길	김석준
박상돈	신학용	우원식	최용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	임중호

### ○정부측 참석자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법무부장관	김성호
국방부장관	김장수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제2차관	장인태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문화산업국장	조창희
농림부장관	박홍수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환경부	
장관	이치범
차관	이규용
노동부	
장관	이상수
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건설선진화본부	정삼정
건설지원팀장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재정경제부제2차관	진동수
통일부차관	신언상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산업자원부제1차관	김종갑
해양수산부차관	이은재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문화재청장	유홍준
산림청장	서승진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중소기업청차장	이기우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	-----

###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민동기
-----------	-----

###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	조창현
방송위원장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12. 5 안명옥 · 이종구 · 최구식 · 이주호 · 박찬숙 · 임태희 · 고진화 · 차명진 · 임해

규·진수희 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2006. 12. 5 정부 제출)

12월 8일 회부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9. 6 오제세·김태년·이해봉·정성호·김동철·유승희·우제창·박명광·서재관·홍창선 의원 발의)

12월 11일 회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이은영·이계안·우제창·강기정·장복심·김동철·정성호·이계경·박상돈·박명광·장영달·김명자·최성·민병두·조일현·선병렬·이경숙·김교홍·정봉주·양승조·이시종 의원 발의)

12월 12일 회부됨

**戸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안명옥·배일도·유정복·엄호성·정의화·이종구·김석준·안홍준·이계경·심재엽·고홍길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권·권철현·김명주·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회부됨